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본 책자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책자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책자에 수록된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디자인권 인식 테스트

6

1

디자인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10
2.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13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14
4.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6
5. 통합적인 디자인보호	17
# 캐릭터 디자인보호 방법	18

2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 팁!

1.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22
2.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23
3.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24
4.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26
5. 해외 디자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28
6.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자는 누구?	30
7.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32
8.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34
9. 로고(Cl,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36
10. 지식재산권 용어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38

3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1.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부분디자인제도와 부품디자인의 출원 전략	42
2.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 관련디자인제도의 활용 전략	46
3.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와 복수디자인제도의 장단점	48
4. 디자인을 조기 공개하거나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 출원공개제도와 비밀디자인제도의 신청 목적	51
5. 디자인을 빨리 등록받는 방법 우선심사와 일부심사제도의 의미	54

4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1. 권리자(창작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58
2.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63

5 온라인 디자인 출원 혼자하기

1. 온라인 디자인출원 절차	68
2. 디자인 도면 작성 요령	84

부록

로카르노 분류코드	96
디자인맵	98
디자인공지증명제도	99

당신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1** 디자인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이다? Y / N p.10
- 2**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다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Y / N p.18
- 3** 졸업전시회에 디자인 전시 후 1년 뒤에 국내 출원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Y / N p.24
- 4** 우리나라에만 출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Y / N p.26
- 5**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 디자인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 아닌 '창작자'이다? Y / N p.30

- 6** '출원'은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을 의미하고,
'등록'은 심사를 거쳐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Y / N p.38
- 7** 전체 디자인 중 특징이 있는 부분만 지정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Y / N p.42
- 8** 디자인은 등록받으면 무조건 바로
공개해야 한다? Y / N p.51
- 9** 디자인출원은 반드시 변리사(대리인)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Y / N p.66
- 10** 디자인출원 시 3D 파일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Y / N p.85

정답 | 1. Y 2. Y 3. N 4. N 5. N 6. Y 7. Y 8. N 9. N 10. Y

1

디자인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외에도 환경 디자인, 운송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화상(GUI)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제품 / 가구 디자인



KR 30-0816328*



KR 30-0727231



KR 30-0729747

환경 디자인



KR 30-0785897



KR 30-0641661



KR 30-0747256

운송 디자인



KR 30-0702724



KR 30-0708448



KR 30-0756192

* 이하, KR XX-XXXXXXX는 한국특허청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간략히 표기한 것임

패션 / 보석 디자인



KR 30-0692515



KR 30-0671652



KR 30-0652447

그래픽 / 패키지 디자인



KR 30-0728392



KR 30-0808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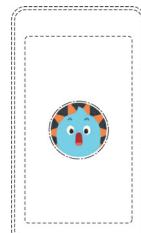


KR 30-0582762

화상(DLU) 디자인



KR 30-0541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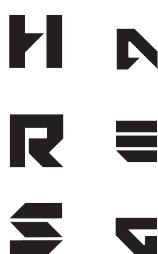


KR 30-0713316



KR 30-0668662

글자체 디자인



KR 30-0731933



KR 30-0696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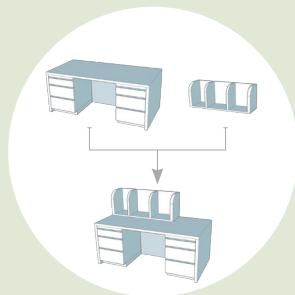


KR 30-0717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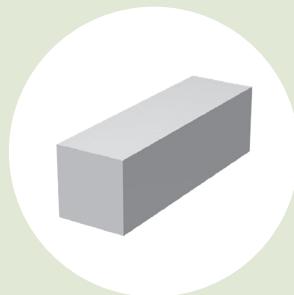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받기 어려운 디자인"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에 동일·유사한 형상이 있는 디자인은 물론 아래와 같은 디자인도 등록받기 어렵다.



기존의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치환한 디자인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 이미지 출처 : viceversa.it



동일하게 양산이
어려운 디자인



국기, 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이미지 출처 : toyheadau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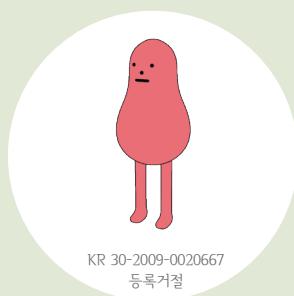
건축물 등
부동산 디자인

· 다만, 반복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는 등록 가능
· 미국과 유럽은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가능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흔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특정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방법 (p.18)
· 상표법으로 보호 가능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특허) / 10년(실용신안)

2

"가능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특허/실용신안법으로 보호"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물건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간단한 구조 변경 또는 조합을 새롭게 개량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젖병 살균기 HOBI TREE



디자이너 이진영이 디자인한 젖병 살균기 HOBI TREE는 젖병 형태의 특성상 깊숙한 곳까지 살균할 수 있는 자외선 봉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디자인되었다. 자외선 봉이라는 기능을 디자인적으로 풀다 보니 최종적으로 나무형상인 HOBI TREE가 탄생하였다. HOBI TREE는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받침부와 수납 구조에 대해서도 보호받기 위해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에도 특허 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허권 KR 10-1171508
디자인권 KR 30-0637847

· 이미지 출처 : www.i-cluedesign.com

수납공간을 구비한 Keeping Chair



디자이너 문재화가 디자인한 수납공간을 구비한 Keeping Chair는 의자 아래의 수납공간에 소지품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고 쌓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하여 재고 보관이나 배송에도 편리한 구조로 디자인되었다. 이 의자는 디자인의 형상은 물론 적재되는 구조도 창작의 핵심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과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특허권 KR 10-0998026
디자인권 KR 30-0710133

· 이미지 출처 : wncart.co.kr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이후 10년마다 갱신 가능

"브랜드 로고와 네이밍은 상표법으로 보호"

기업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명 또는 캐릭터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통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리비또

rabilo

KR 40-0962704



KR 40-0891810

크림하우스프레즈



**CLOUD
CHAIR**

KR 40-1139804



KR 40-1000484



KR 40-2015-0025348

CLOUDHAUS

KR 40-1106774

로우로우

RAWROW

KR 40-0924206

RAWROW

KR 40-1018360

부지



KR 41-0132744



KR 40-0587015



KR 45-0013769



KR 40-0708823

"디자인의 외관이 제품의 기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형상이 아니라면 입체상표로 보호"

입체적인 디자인이 일반적인 형상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거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 특징만으로 특정 생산자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출처의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법을 통해 입체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법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디자인권(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신용의 유지 및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유 형태와는 다른 배 부분이 볼록한 형상의 바나나맛 우유, 평범한 아이스크림보다 독특한 외형을 갖는 파베기 모양의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이 그 출처의 생산자인 빙그레와 롯데제과가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이유이다.

다만, 제품의 기능 구현을 위한 형태라면 디자인권 또는 특허/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므로, 입체상표로 보호받는 디자인은 장식적인 형태에 한정될 개연성이 높다.

입체상표로 보호받는 디자인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KR 40-0539281



에스티로더 화장품
KR 40-0885142



스팸
KR 40-0853623



브레브 파워액티브
KR 40-1073148



롯데제과 스크류바
KR 40-1036102



마아즈 초코렛 D
KR 40-0900919

4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디자인이 예술적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예를 들어 넥타이나 냉장고, 벨트 버클은 물품 자체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넥타이와 냉장고의 그래픽 디자인 또는 벨트 버클의 미적인 요소 부분이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될 수 있고 창작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으로 중복 보호할 수 있다.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



삼성전자 김치냉장고의 도안



Kieselstein-Cord의 벨트 버클

· 이미지 출처 : samsung.com(중), brintons.net(우)

저작권법은 디자인보호법, 특히/실용신안법, 상표법과 달리 별도의 출원절차 없이도 창작물을 완성하는 즉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발생시기와 창작자를 증명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www.cros.or.kr)에 창작과 가까운 시점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창작일자와 저작권자를 추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 (저작권법 제5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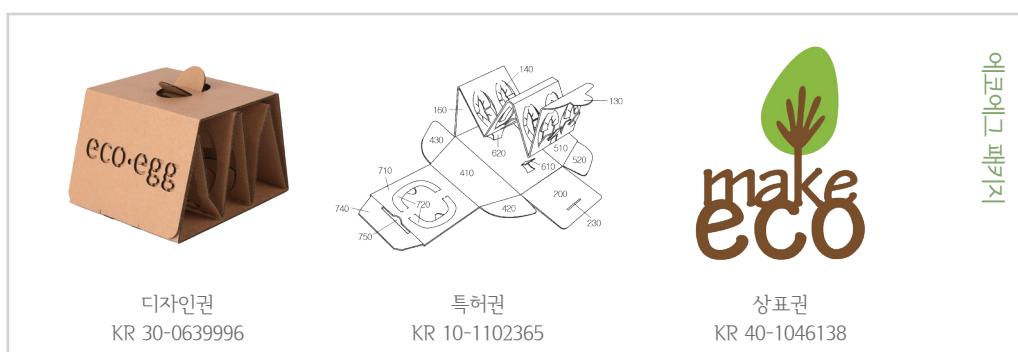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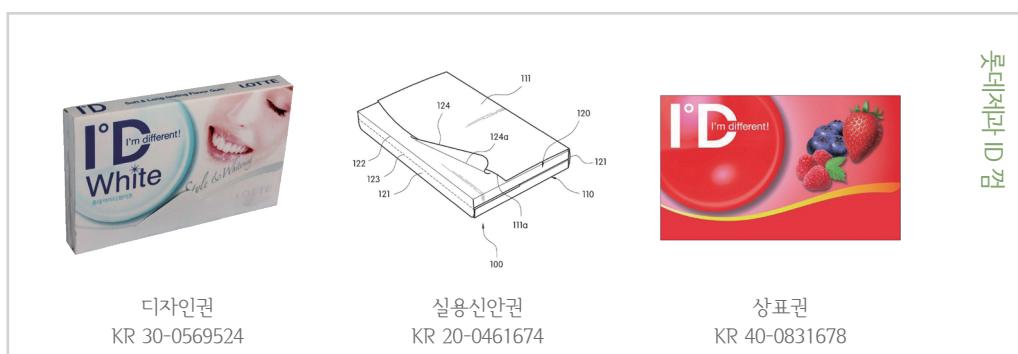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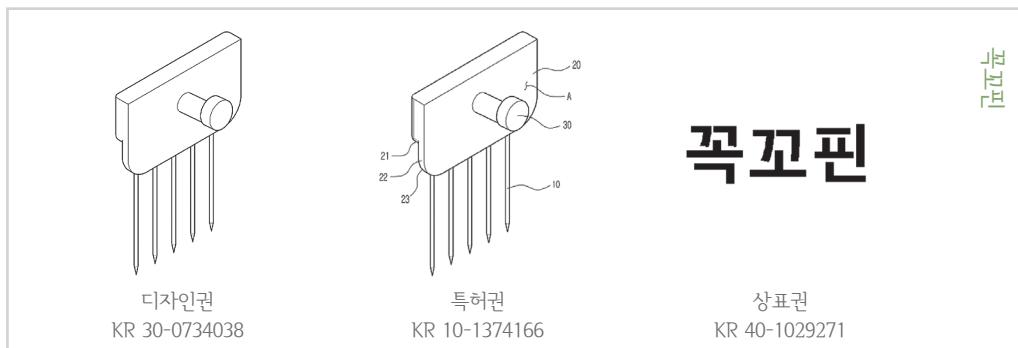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평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권리 주장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디자인은 타인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정도로 매우 흡사해야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될 만큼 보호범위를 매우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

통합적인 디자인보호

5

"디자인 창작 포인트에 따라 중첩 보호"

디자인에 담긴 창작 포인트에 따라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으로 중첩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권리보다는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빈틈없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다. 다만, 출원료 뿐만 아니라 등록 유지요가 발생되는 등 비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출원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다.



"캐릭터 디자인보호 방법"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다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상 중요한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만 의존할 경우 예기치 않게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각 법의 취지에 따른 보호범위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첩적인 권리 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법

캐릭터의 변형이 있거나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캐릭터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창작성이 있는 캐릭터라면 대체로 저작권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추세다. 다만, 캐릭터 이름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술저작물
C-2013-018793

· 이미지 출처 : store.kakaofriends.com

| 상표법

캐릭터 형상뿐만 아니라 캐릭터 이름(ex. 뽀로로)은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된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해당 캐릭터를 일정기간 상표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침해자가 내 캐릭터를 상표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상표권
KR 40-1052717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도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지만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캐릭터 자체의 시각적 이미지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어려우며, 캐릭터 디자인이 반드시 물품에 채화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캐릭터 자체 보호 가능). 디자인권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침해가 성립되어, 캐릭터가 적용되는 물품마다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디자인권
KR 30-0751204

디자인보호법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받는 방법

a 특정 물품에 형상화되지 않은 2차원적인 캐릭터를 창작했다면, 2차원적인 물품(라벨, 스티커, 전사지 등)으로 출원하면 넓은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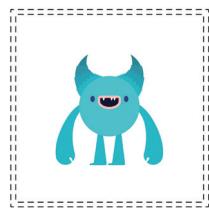


라벨
KR 30-0827879



전사지
KR 30-0746212

b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는 '화상(GUI)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p.90)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KR 30-0789769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KR 30-0645239

c 캐릭터 자체가 3차원으로 형상화된 제품(인형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창작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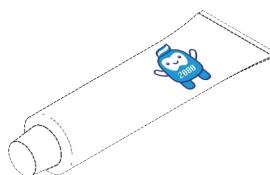


방취제용 용기
KR 30-0682418



젓가락
KR 30-0675134

d 캐릭터를 특정 제품(포장용기, 의류 등)에 2차원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 예정인 특정 제품을 점선처리 하여 부분디자인(p.42, 89) 출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점선처리 된 제품의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치약용기
KR 30-0595338



티셔츠
KR 30-0597778

2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 팁!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화 구상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자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선별하였다.

1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둘 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실제 창작시점의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비록 내가 타인의 디자인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선 출원한 디자인에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연히 제3자와 내가 '같은 날'에 출원했다면 출원인의 협의로 정한 하나의 디자인만 등록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특허청에 먼저 출원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출원디자인에만 권리를 부여한 사례

양 디자인은 간발의 출원일 차이로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다. 매우 유사한 형상의 난방용 방열기(Radiators for heating) 디자인을 A 사는 2005년 3월 15일, B 사는 2005년 3월 23일 유럽연합지재권청(EUIPO)에 출원했다. B 사는 디자인출원 당시 A 사의 선행 디자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 앞서 출원한 A 사의 선행디자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B 사의 디자인은 A 사의 디자인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심판번호 : ICD 000001923)

[A 사 디자인]



EUIPO 000313572-0003

출원일 : 2005.03.15

출원인 : Pitacs Limited

[B 사 디자인]



EUIPO 000330402-0017

출원일 : 2005.03.23

출원인 : Kamil Korhan Karag llе

VS

디자인 분쟁 사례 : <http://www.designmap.or.kr/iph/IpFtFrD.jsp?p=162&x=10>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2

특히 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 전에 국내·외 어딘가에 공지된 디자인은 비록 내가 공지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혹시나 심사관이 공지된 디자인을 발견하지 못해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나중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어 불완전한 권리 상태가 된다.

공지의 예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1. 전시회에 전시된 디자인
2.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공개된 디자인
3. 잡지, 신문, 카탈로그, 논문 등에 게재된 디자인
4. 공모전에 출품해 공개된 디자인
5. 세미나, 강의에서 공개한 디자인
6.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7.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디자인 등

많은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 사이트나 홈페이지,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알리며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들인 졸업 작품을 디자인권리화 없이 졸업 전시회에 공개한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라이선스를 맺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디자인출원을 고려해보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가구브랜드 매터앤파터(Matter and Matter)는 2010년 리빙디자인페어 전시회에 레그 체어(leg chair)를 선보였다. 그 후 매터앤파터는 C 사의 체인 식당 일부에 레그 체어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국내 큰 가구 회사(A)에서 레그 체어와 흡사한 의자를 C 사의 체인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 있었다. 법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변리사를 찾아갔으나, 처음 디자인을 공개한 리빙디자인페어에 전시한 지 1년이 지나 더는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레그 체어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사에도 경고장을 보냈으나 레그 체어는 매터앤파터에 디자인권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매터앤파터의 레그 체어

A 사의 의자

· 이미지 출처 : <http://matterandmatter.com>(좌), A 사 홈페이지(우)

3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된 지 12개월(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에 한해 등록받을 기회(신규성상실의 예외 제도)를 주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및 시행_제36조)

참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17.3.21)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이 '17. 9. 22.부터는 과거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 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을 국내·외 어딘가에 공개했다면, 처음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났다면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어려우며, 다행히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한다. 단, 내가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자진신고(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를 해야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증명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게 권리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 시기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디자인출원 시 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를 위해 편리하다. (p.79) 디자인출원 시 주장하지 않았다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무효심판에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기간에도 주장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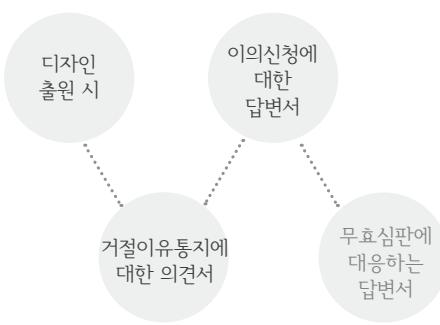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류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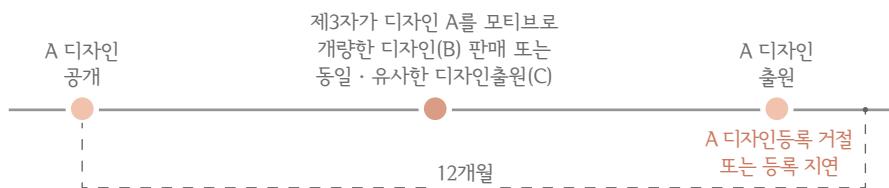
증명서류에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 등 객관적인 사실 제시 필요

1. 공지형태 :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이 나타나 있어야 함
2. 공지일자 : 공지한 날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공지주체 : 디자인을 공개한 사람과 출원인(또는 권리승계인)이 같아야 함. 다른 경우에는 공개된 디자인이 출원인의 디자인에 기인하여 공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만약 디자인 공개 후 12개월이라는 기간만 믿고 마지막 날까지 출원을 미루는 사이에 제3자가 공개한 나의 디자인을 모방해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디자인(A)은 제3자의 디자인(B)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개일자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된



나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먼저 출원(C)하고, 내가 나중에 출원하게 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류 준비

이자브(YZAB)의 이재창 디자이너는 디자인출원 전 '마이홈' 책상 디자인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처음 공개했다. '블로그'는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가 모두 나타나 있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이자브가 마이홈 디자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했다면, 홈페이지에 공지일자가 없어 증명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제3자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마이홈 제품 이미지를 다른 사이트나 잡지 등에 날짜가 나와 있는 상태로 공개했다면, 디자인 심사 시 제3자의 공개 자료로 인해 마이홈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원 계획이 있다면 12개월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증명서류의 요건에 맞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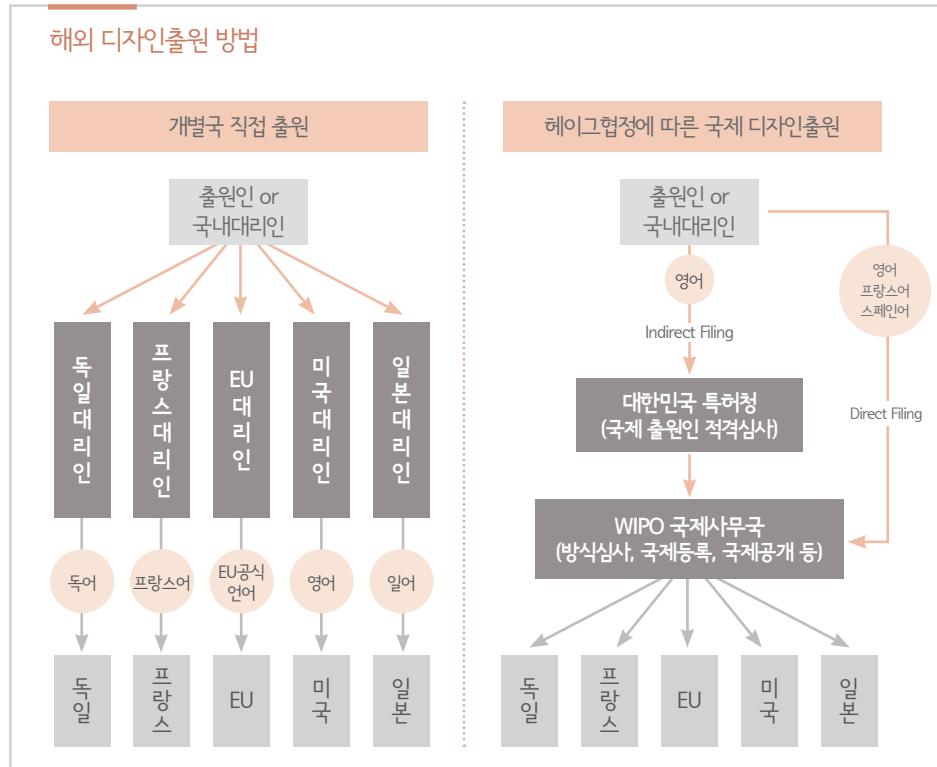


4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디자인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한국에서만, 미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미국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속지주의). 내가 디자인한 제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국가에 권리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므로, 그중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지 선택해야 한다.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방법(파리 루트)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출원(헤이그 시스템)이 있다. 헤이그 시스템은 개별국 직접 출원 대비 절차가 간편하며, 국제 출원을 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을 수록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해외 주요 국가의 디자인 심사방식

디자인을 심사하는 방식은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한 심사(실체심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심사방식'과 '일부심사(구, 무심사)' 두 가지로 나뉜다. '심사방식'은 도면 흡결 등을 검토하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고, '일부심사방식'은 '방식심사'만 진행하고, 선행디자인 검색은 진행하지 않아 조기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p.55)

한국은 유일하게 물품에 따라 '심사방식'과 '일부심사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심사주의 국가로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유럽연합과 중국은 일부심사주의 국가로 방식심사만 진행한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심사 · 일부심사	심사	심사	일부심사	일부심사

해외 주요 국가의 디자인보호기간

국가별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간이 다르다. 가장 긴 기간 동안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으로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받고, 이후 5년마다 최대 4회 갱신해 최장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최대 20년으로 같지만,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이 다르다. 한국은 설정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디자인보호법 제91조), 일본은 '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디자인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등록료를 한 번에 내게 된다. 중국의 디자인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로 가장 짧은 편이나, 1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의견 수렴 중에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25년	출원일로부터 10년

5 해외 디자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해외 시장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 한국에서 성공 후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등록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라 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한국의 신규성상실의 예외 제도(p.24)와 같이 처음 공개한 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에 해외 디자인출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1년	1년	1년	1년	6개월

중국의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 요건

특히,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개된 아래의 경우에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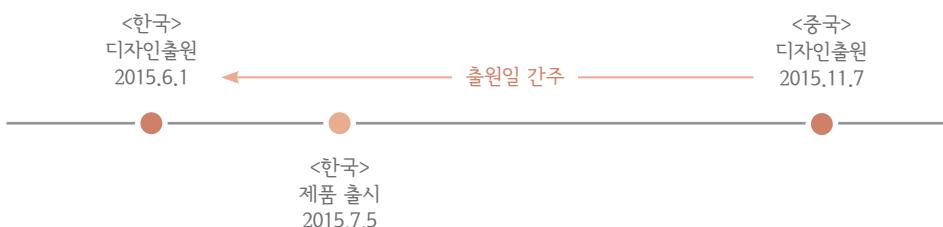
- a.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 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그 외의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자인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미리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특허청에 디자인출원 후 6개월 이내 해외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한국특허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나라에 우선권 주장을하며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주의(p.22), 신규성(p.24)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해당 출원일이 아닌 한국의 출원일로 간주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해외 출원을 기초로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 가능). 판단 시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한국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2015년 7월 5일 제품을 출시하며 디자인을 일반 대중에 공개, 그리고 2015년 11월 7일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은 정부에서 정한 방법 외로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에는 디자인을 등록받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다면, 신규성 판단 시점이 중국의 출원일이 아닌 한국의 출원일인 2015년 6월 1일로 간주되어, 신규성상실을 이유로 디자인을 등록받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하는 디자인이 동일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디자인보호대상과 도면 요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물 등 부동산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캐릭터 자체를 유럽연합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한국은 물품에 체화된 상태로만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다. (p.18)

6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자는 누구?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 (p.78)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원인에는 기업(법인) 또는 권리 승계인을, 창작자에는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직원, 외주업체)의 이름을 넣는다. 하지만, 이 경우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출원인 뿐이다. 비록 창작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갖지만, 기업명이나 타인명을 출원인에 기재하면 권리를 승계한 것이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출원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또는 법인)들은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이 되면 디자인권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명예적인 지위만 있을 뿐 그 디자인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다.



· 출원인 : (주)굿지앤

· 창작자 : 카림라시드

KR 30-0697884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라시드는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 (주)굿지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마마쉐프 냄비'를 출시했다. 마마쉐프 냄비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은 '(주)굿지앤'으로 이 디자인의 권리자이다. 카림라시드가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라 해도 한국에서는 마마쉐프 냄비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고, 권리행사(침해주장 실시권 등)를 할 수 있는 이는 디자인권자인 (주)굿지앤이다(물론 창작자 카림라시드는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igoodgn.com

공동 출원인인 경우

출원인란에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양도, 대여, 소멸 등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동의가 없어도 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은 공동 출원인과 나누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만일 공동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원가 절감과 활발한 홍보로 시장을 장악해 버려, 다른 출원인의 매출은 저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익 분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원인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A라는 회사가 당신의 디자인을 사업화하자고 제안하며, 출원인 명의 변경 또는 디자인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원인 변경 또는 디자인권 전부양도는 디자인권리 지분이 모두 A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에 대한 가치만큼 디자인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는 명의 이전을 하기보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출원인란에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 고민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밖에 없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 출원이 가능하다. 법인명의와 개인명의는 디자인권리를 행사하는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a 출원·등록 수수료 (p.83)

개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85%(19세 이상 30세 미만, 65세 이상 개인) 또는 7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b 기타

출원인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 채무로 디자인권도 가압류 또는 압류될 위험성이 있으나, 개인명의인 경우 개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7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디자인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면, 해당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디자인 판매 및 사용 등이 불가하며, 제작된 제품 모두 폐기처분해야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및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디자인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디자인 선행조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디자인뷰(Design View), 디자인맵(Designmap)을 통해 무료로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 선행조사기관* 또는 변리사를 통해 유료로 진행할 수 있다. 그중 디자인뷰는 유럽연합지재권청(EUIPO)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여러 나라의 등록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으며, 디자인맵은 한국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6개 기관(한국, 일본, 미국, WIPO, EUIPO, 독일)의 등록디자인을 물품별로 검색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p.98)

무료 디자인 선행조사 사이트

한국



www.kipris.or.kr

일본



www.j-platpat.inpit.go.jp/web/ishou/isbs/ISBS_GM101_Top.action

미국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bool.html>

중국



epub.sipo.gov.cn/gjcx.jsp

WIPO



<http://www.wipo.int/designdb/hague/en/>

EUIPO



oami.europa.eu/eSearch

디자인뷰



<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디자인맵



designmap.or.kr

* 전문 선행조사기관 :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http://www.kiwee.or.kr>

(주)윌스 <http://www.wipscorp.com>

한국특허청의 디자인 선행조사

한국특허청의 선행조사 사이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디자인 검색 시 '물품명칭'으로 검색하면 해당 물품명칭의 디자인만 검색이 되므로, 관련 물품을 모두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 물품의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한국분류코드'를 찾아 검색하면 원하는 물품이 해당 분류코드에 모아져 있어 검색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 키프리스 접속

- 디자인 스마트 검색 창 열기
- 분류정보 [도우미]에서
분류코드 검색

2 | 명칭으로 검색 후 한국분류코드 찾기

- 물품명칭으로 한국분류코드 검색
- 관련 코드를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클릭

3 | 한국분류란에 한국분류코드 입력

- 한국분류코드로 검색 진행

4 | 선행조사 진행 및 권리유무 판단

- 등록 : 권리있음
- 소멸, 거절, 취하 등 : 권리없음
- 공개 : 출원인에 의한 조기공개로 심사진행 중임



8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둘 이상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판단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우선,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만일 용도가 전혀 다른 물품이라면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하나는 냉장고이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이라면 비록 디자인 외관이 동일·유사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용도와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라면,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형상이라면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형상이라면 그 부분은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유사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경우
새로운 물품 같은 종류의 물품 중 새로운 부분을 포함한 것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것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원형의 본체와 날개, 기둥, 받침대로 구성된 스탠드형 선풍기는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디자인으로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고 판단하여, 형상이 흡사해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상이므로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날개 없는 원형의 선풍기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디자인 외관의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선풍기 디자인



KR 30-0647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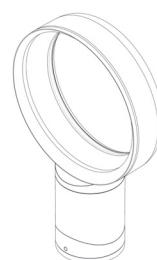


KR 30-0708276



KR 30-0739524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디자인



KR 30-0783510

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해야 유사한 걸까?

아모레퍼시픽은 '한율' 화장품을 2007년 12월 10일 한국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판매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회사에서 '결'이라는 화장품을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결' 화장품이 '한율' 화장품과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A사를 상대로 '한율' 용기 디자인권리를 침해했다며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심결번호 : 2008당3934)

아모레퍼시픽과 A 사의 화장품 용기만을 놓고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에 의해 두 개의 분쟁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되었다.

유사점

- ① 용기의 외형 라인이 외측으로 불록한 곡선을 이룸
- ② 용기 몸체와 뚜껑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③ 용기 몸체의 색채가 위에서 아래로 점차적으로 엷어짐
- ④ 뚜껑의 색채가 연한 황금색임

분쟁대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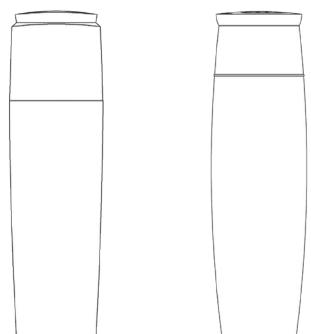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의 '한율' 화장품 A 사의 '결' 화장품
KR 30-0484756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이 한국특허청에 출원하기 이전에 출원된 선행디자인을 같이 놓고 비교해보자.

색상은 확인할 수 없으니 용기의 외형만 놓고 비교했을 때, 외형에 관한 유사점(①, ②)은 선행디자인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용기의 형상이므로, 아모레퍼시픽에게 독점적 권리를 줄 수 없다. 즉, 아모레퍼시픽과 A 사의 화장품 용기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그 외의 특징에 비중을 두어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봐야 한다. 이러한 전제로, 특허심판원은 '한율' 화장품과 '결' 화장품은 뚜껑의 비율, 뚜껑의 색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하였다.

선행디자인



참존의 화장품
KR 30-0362498
LG생활건강의 화장품
KR 30-0411116

디자인 분쟁 사례 : <http://www.designmap.or.kr/iph/lpFtFrD.jsp?p=246&x=2>

9 로고(CI,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회사와 브랜드의 로고 및 네이밍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도메인을 확보했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상호를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그 로고와 네이밍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는 관할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청을 통해 상표법으로 등록받으면 전국적으로 독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표를 독점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및 상호와 별개로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는 별개 출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한다(선출원주의).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3자가 나의 상표권을 선점한 경우, 사용하고 있던 나의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료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되찾아야 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상표출원부터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자가 된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업 초기부터 각 국가별로 상표권 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모방상표가 많기 때문에 중국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길 권한다. 중국 상표는 한국에서 사용한 상표명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발음하기 좋은 중문 브랜드도 개발하여 진출하는 것이 좋다. 단, 미국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Filing basis).



· 이미지 출처 : apple.com

중국에서의 상표 분쟁 사례

애플은 iPad 상표를 중국에 출원했으나, 중국에서 iPad 상표권을 선점하고 있던 심천 Proview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 및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iPad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년 동안의 상표 분쟁 끝에 애플은 Proview에 6,000만 달러(약 68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2012.7.2)하고, 'iPad'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보호 가능

상표권은 등록연장료만 계속 지불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있어 상표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표출원 시 지정한 사업분야(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에서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선행조사로 상표성 판단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관련 사업분야(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에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상표를 특히 청에 출원했는데, 어떤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상표의 독점 사용을 포기하고 계속 사용하든지, 새로운 상표를 개발해 다시 출원절차를 밟고, 그 상표를 알리기 위해 다시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상표 선행조사를 진행해 안정적인 상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상표 선행조사로 안전하게 상표권을 확보한 사례



· 이미지 출처 : plasticfarm.co.kr

디자인기업 플라스틱팜의 'RE TREE SOAP(리트리솝)'의 초기 제품명은 '버블트리'였다. 키프리스에서 상표검색 결과 '버블트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명(ex. 토니모리 버블트리, 버블엔젤, 버블팡, 허니버블 등)이 다수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RE TREE SOAP'으로 상표명을 변경하였다.

10 지식재산권 용어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디자인보호법 vs 의장법

디자인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구명칭은 '의장법'이다. '의장'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해 2005년부터 '의장'이라는 용어 대신 '디자인'으로 일괄 변경되었다.

출원 vs 등록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출원'과 '등록'의 차이다. '출원'은 국가에 등록시켜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마치 권리를 획득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등록'은 심사를 거쳐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비로소 등록이 되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A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려 한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만이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서 접수를 '출원', 합격을 '등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출원"

심사

"등록"

지식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실용신안출원 제 20-2013-0010721호
 디자인등록 제 30-0759966호 / 제 30-0759970호

리픽스(REFIX)의 '펜슬홀더'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제품 소개와 함께 지식재산권 정보를 표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정보 표기는 모방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만일, 자신의 등록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2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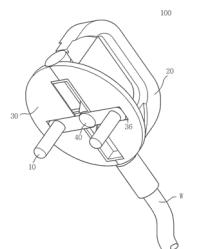
'펜슬홀더'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살펴보면, 실용신안은 '출원' 상태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등록결정이 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디자인은 '등록'을 받아 디자인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5년 12월 기준). 만일 등록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용신안출원'이 아닌 '실용신안등록'이라고 잘못 표기했다면, 실용신안권리가 있는 걸로 소비자가 잘못 인지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refix.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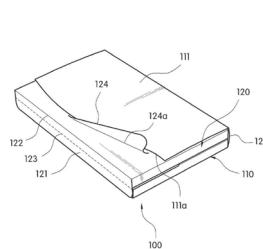
출원번호 vs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듯이,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발급받는 출원번호, 등록번호만 보고도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다. 그중 출원번호와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로 권리의 구분할 수 있다.

1은 '특허', 2는 '실용신안', 3은 '디자인', 4는 '상표'를 의미한다.



특허권
KR 10-0949459



실용신안권
KR 20-0461674



디자인권
KR 30-0816328



상표권
KR 40-1000484

3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특징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때 더 강력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1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부분디자인제도와 부품디자인의 출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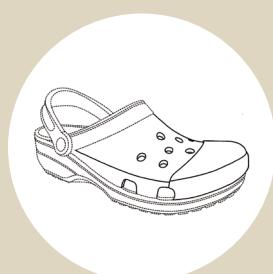
1 | 부분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제도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받고 모방품의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한다. (p.89)

"내 디자인의 권리보호? 1순위가 부분디자인이다!"

부분디자인제도로 출원한 크록스의 신발 디자인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외관을 실선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표현하여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창작한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범위 설정이 가능하여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디자인제도로 출원한 크록스의 신발 디자인



KR 30-0435519



KR 30-0674328



KR 30-0435515



KR 30-0439328



KR 30-0435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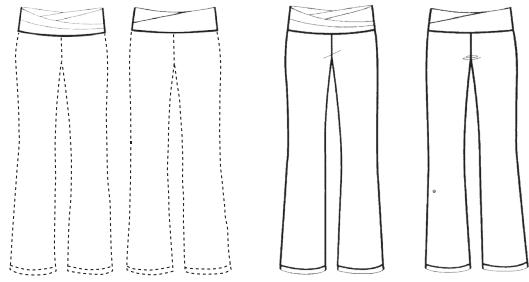
KR 30-0494270

"일부분만 권리범위를 특정할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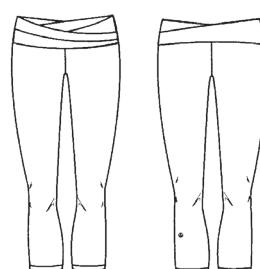
디자인출원 시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면 권리범위가 넓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적게 표현할수록 오히려 권리범위가 넓어진다. 그 이유는 제3자가 내가 표현한 부분만 채택해서 사용한다면, 그 외의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2년 캐나다의 Lululemon이 요가팬츠에 대한 디자인특허^{*}를 근거로 Calvin Klein을 상대로 미국 내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사건번호 : 1:12-cv-01034-SLR) Lululemon의 디자인특허 US D661,872는 가장 특징적인 허리의 밴드 부분만을 실선으로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 이렇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누군가 허리 밴드 부분의 형상만을 모방했다면 모방품이 반바지든 긴바지든 다리 부분의 형상이 어떻게 바뀌든 권리범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넓은 권리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Lululemon의 요가팬츠와 미국의 디자인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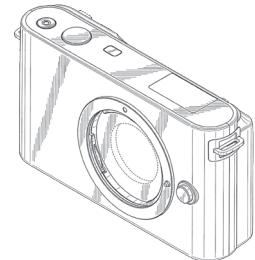
Calvin Klein의 요가팬츠



· 이미지 출처 : <http://www.dailymail.co.uk>

* 디자인특허 : 한국은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이 별도의 법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미국은 디자인이 특허의 유형으로 취급되어 디자인특허라고 부름

또 다른 사례로, 2013년 일본의 Nikon이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근거로 Sakar의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관해 미국 내 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Nikon의 디자인특허 US D682,906은 버튼과 본체의 라인 등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을 점선으로 처리해 권리범위를 넓게 등록받았다. Sakar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나머지 부수적인 버튼이나 렌즈형상 등의 유사 여부와 무관하게 특징적인 외관과 주요버튼 등을 모방하여 Nikon의 디자인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되었다. (사건번호 : 13-Civ-7228(S.D.N.Y))



US D682,906

Nikon의 카메라와 Sakar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 이미지 출처 : <http://www.engadget.com>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적게 표현한다면 심사과정에서는 내가 권리범위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낮아진다. 설사 등록받더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쉽게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로 특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조율하여야 훌륭한 디자인출원 전략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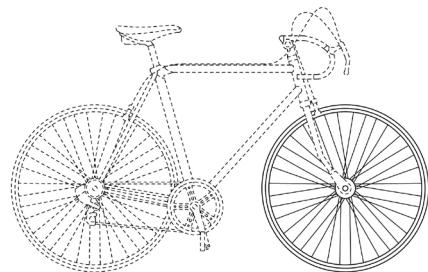
2 | 부품디자인

부품디자인이라면, 전체 물품의 일부분 중 독립적인 물품(단추, 바퀴, 손잡이 등)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부분디자인과 부품디자인이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권리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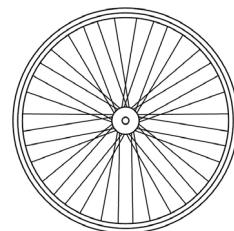
디자인 침해판단 시에는 물품이 동일 ·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전거 바퀴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자전거 전체를 표현하고 바퀴만을 실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와 바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부품디자인) 중 선택해야 한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자전거의 경우, 제3자가 바퀴만 모방 및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의 물품은 '자전거'이고,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은 '바퀴'이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모방한 바퀴를 구매해 '자전거'로 판매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반면, 부품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자전거용 바퀴의 경우라면 둘 다 물품이 '바퀴' 이므로 침해주장이 보다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부분디자인보다 부품디자인이 더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부정경쟁행위 등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부분디자인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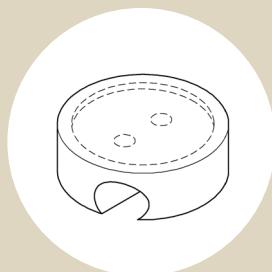


부품디자인
"자전거용 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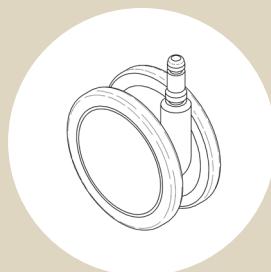


그렇다면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할지,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정답은 '내가 창작한 디자인이 독립적인 물품인가'이다. 컵의 손잡이나 마우스 휠과 같이 물품의 일부분이라서 별도로 판매되지 않는다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한다. 반면, 옷의 단추, 가구의 바퀴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부품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아래 예시 중 '단추'와 같이 부품디자인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단추
KR 30-0715831



가구용 캐스터
KR 30-0784093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
KR 30-0809459

2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

관련디자인제도의 활용 전략

1 | 관련디자인제도

디자인출원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과연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이렇듯,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 시 유사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더군다나 디자인은 한 번 창작되면 변형된 디자인들이 계속적으로 창작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서 일부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나의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유사범위)를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유사디자인제도가 관련디자인제도로 변경됨) (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도의 권리를 갖지만,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보호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한다.

기본 -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기본
디
자
인



KR 30-0790744



KR 30-0813851



KR 30-0829317

관
련
디
자
인



KR 30-0791111



KR 30-0820198



KR 30-0829319

만약 기본디자인과 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하라는 통지서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였으나 심사관의 판단에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하라는 통지서가 발행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착오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역으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해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기본디자인도 유사범위까지 보호되는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하는 이유"

제3자가 내 디자인을 모방하여 일부 변형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판매제품이 내 디자인권(기본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다면 침해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우측 그림과 같이 제3자의 판매제품이나의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할 정도로 변형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방했다는 걸 알고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관련디자인을 출원했다면 어떻게 될까?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범위가 미친다. 즉, 기본디자인과는 비유사하지만 관련디자인과는 유사한 제3자의 판매제품까지 권리범위가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관련디자인출원을 통해 권리범위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제3자가 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하여 모방제품을 제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디자인권은 권리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피설계라는 맹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피설계하기 까다롭게 권리범위를 확보한다면 모방품 출시가 최소화되어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3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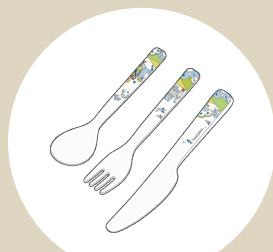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와 복수디자인제도의 장단점

1 |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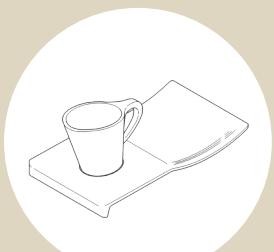
디자인출원 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출원서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출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물품이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고, 각 구성물품이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관념적으로 관련 인상을 주어 통일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42조) (p.93)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각각의 물품을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것보다 비용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으나 권리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물품이 모였을 때 미적 가치가 발생하는 디자인 또는 동시에 제작 및 판매되는 제품들(유니폼, 식기세트 등)에 한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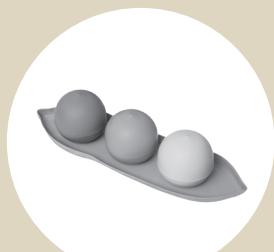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한 벌의 스푼, 포크 및 나이프
KR 30-0778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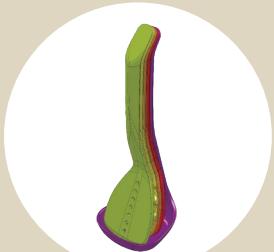
찻잔 및 받침접시
KR 30-0508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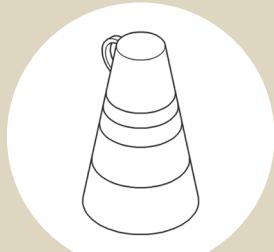
한 벌의 커피세트
KR 30-0808096



한 벌의 장신구세트
KR 30-0704733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세트
KR 30-0702098



한 벌의 캠핑용 식기세트
KR 30-0630984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것보다 권리범위가 더 좁아진다."

여러 개의 물품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각 구성 물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 상태로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누어 등록받을 때보다 권리범위가 더 좁아지게 된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물품은 제3자가 하나의 세트 상태로 모두 사용하고 있어야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되고, 한 벌 물품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물품 중 일부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대한 권리화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 D2B 디자인페어 은상 수상작 'Birds' 도기세트



Concept.

스프 그릇과 스푼으로 구성된 Birds 도기세트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이용해 어미 새와 아기 새 그리고 어미 새가 아기 새를 업고 있는 듯한 여러 가지 감성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 이미지 출처 : d2bfair.or.kr

상기 'Birds' 도기세트와 같이 스프 그릇과 스푼을 세트 상태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제3자가 스푼만 만들어 판매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고, 스프 그릇과 스푼을 함께 사용했을 때 비로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보다 아래와 같이 스프 그릇과 스푼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권리범위를 더 넓게 보호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등록받은 'Birds' 도기세트



스프 그릇

KR 30-0786404



스푼

KR 30-0786403

2 | 복수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제도는 여러 디자인이 같은 물 품류(로카르노 분류코드)(p.96)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개까지 한 번의 절차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어 출원절차가 간소화되는 편리성이 있다. 그러나 출원번호도 각각 생성(출원번호는 같으나 M01, M02, M03 … 으로 출원번호 구분)되고, 출원료도 디자인 개수만큼 부과되며, 디자인권 리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 이미지 출처 : frompec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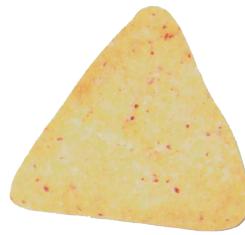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한 페코마트의 메모지 디자인



KR 30-0630587[M01]



KR 30-0630587[M02]



KR 30-0630587[M03]



KR 30-0630587[M04]



KR 30-0630587[M05]



KR 30-0630587[M06]

디자인을 조기 공개하거나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

출원공개신청제도와 비밀디자인제도의 신청 목적

4

1 | 출원공개신청제도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결정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공보(특허정보넷 기프리스 www.kipris.or.kr)에 공개되는데, 출원 중(등록 전)인 디자인 또는 등록이 거절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출원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디자인 공개에 따른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인이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공개를 신청해야 디자인이 공개된다.

출원공개신청을 하는 목적은 대표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등록 전)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3자가 내 제품을 모방해서 판매하는 경우(p.61)이다. 물론 부정경쟁행위임을 근거로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행사를 함께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내 디자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고 출원 중이므로 이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모방행위가 발견되면 출원공개신청을 통해 나의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에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단, 모방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개에 따른 제3자의 모방행위의 예방을 위해 출원공개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공개신청을 한 디자인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다로스 주식회사의 수도꼭지 핸들 디자인은 출원공개신청을 통해 등록 전임에도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다. 출원공개신청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추후 심사를 통해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디자인이 공개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청구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출원공개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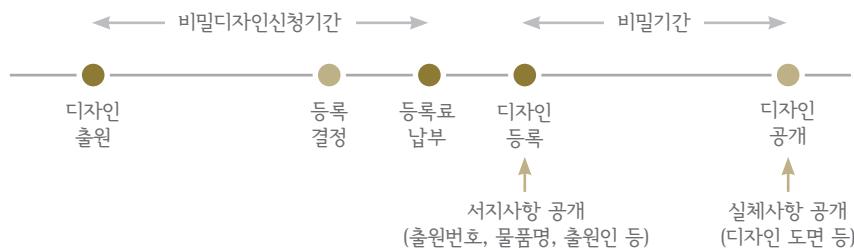
* 보상금청구권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실시할 경우, 알게된 날부터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보호법 제53조)

2 |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신청제도와 반대로 내가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디자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비밀디자인을 신청(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출원한 디자인을 바로 상품화한다면 굳이 비밀디자인을 신청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도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면 오히려 제3자가 디자인등록공보에 공개된 나의 디자인을 보고 먼저 모방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디자인신청을 통해 나의 등록 디자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해놓고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디자인신청기간

비밀디자인은 출원 이후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 납부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밀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연장·단축도 가능하다.



나의 등록디자인이 비공개 상태에서 제3자의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경우 대처 방법

제3자가 나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함을 이유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의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어야(과실) 한다. 비밀디자인 제도를 통해 비밀디자인을 제3자가 알 수는 없다. 더욱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비밀디자인의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나의 디자인등록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디자인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나의 등록디자인을 인지시켜야 추후 소송 발생 시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청에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을 제출하고, 침해자에게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을 첨부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면 된다.

비밀디자인신청 시 유의사항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공보는 발행된다. 다만, 등록공보 상에 서지사항(출원번호, 출원인 등)만이 공개될 뿐 디자인의 도면 등과 같은 실제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비밀디자인신청 이후에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비밀디자인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여 디자인이 공개되니 유의해야 한다.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상태와 디자인 도면이 공개된 상태의 키프리스 검색결과

a.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상태의 검색결과



b. 디자인 도면이 공개된 상태의 검색결과



또한, 한국에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했다면 해외 출원 시 각 국가의 비밀디자인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비밀디자인제도와 같이 디자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없어서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당 특허청 공보에 디자인이 공개된다.

상기 사례의 '휴대용 텔레비전 수상기(KR 30-0778364)'는 한국특허청에 비밀디자인을 신청하여 등록된 이후에도 서지사항만 공개되었을 뿐 디자인 도면은 공개되지 않았다(a). 그러나 2015년 4월 7일, 해당 디자인이 미국특허청에 등록(US D726,136)되어 먼저 공개가 되었다. 미국특허청에 디자인이 공개된 지 약 3달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한국특허청에도 출원인이 신청한 비밀기간(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디자인 도면이 공개되었다(b). 이처럼 각국의 제도에 따라 의도치 않게 디자인이 공개될 수 있으니, 디자인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각 국가의 제도를 고려하여 해외 디자인출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5 디자인을 빨리 등록받는 방법

우선심사제도와 일부심사제도의 의미

1 | 우선심사제도

일반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원일로부터 평균 8개월이 지나야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상 빠른 디자인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활용하여 약 3개월 이내의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심사신청 시 7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우선심사의 대상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

(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

출원공개신청(p.51) 후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 이 때 빠른 등록을 통해 강력한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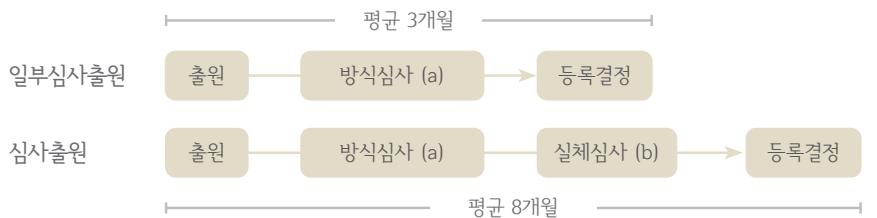
우선심사 신청 시 출원디자인을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시제품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한다.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행디자인조사전문기관(p.32)에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유료)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4차산업관련분야의 디자인 등록출원도 '18.1.2.부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2 | 일부심사제도

일부심사제도(구, 무심사제도)란,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 디자인출원 이전의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한 심사(실체심사 (b))를 진행하지 않고, 도면 흄결 등 절차적인 심사(방식심사 (a))만 진행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부심사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로카르노 분류코드(p.96)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강제적으로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른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심사출원의 경우 심사기간이 평균 8개월이라면 일부심사출원의 경우 약 1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심사출원은 출원 · 등록비용(p.83)도 심사출원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심사출원과 다르게 선행디자인 검색(실체심사)을 진행하지 않아 등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심사단계에서 선행디자인을 검색하지 않고 조기에 등록시켜준다는 의미 일 뿐, 등록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거절사유가 있는 선행디자인에 의해 취소 또는 무효화 될 수 있다. 일부심사출원이더라도 예외로 이미 국내 · 외에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거절될 수 있다.



바로셀로나 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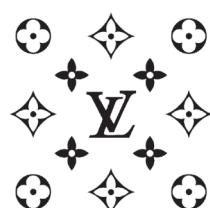
US 2,893,025

· 이미지 출처 : www.knoll.com



뽀로로 캐릭터

KR 40-0856687



루이비통 패턴

FR 113873583

4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든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하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자(창작자) 입장과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1

권리자(창작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볼펜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새로 디자인한 볼펜을 한국특허청에 디자인출원하고
제품도 출시했어요. 그런데 경쟁업체에서 제 볼펜과 비슷한
디자인의 볼펜을 팔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당 사례와 이미지는 관계없음

· 이미지 출처 : www.appree.net

1 |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은 상태라면,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디자인을 침해한 경쟁업체에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죄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나, 경고장 발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 발송 전에 나의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이 유사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침해품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나의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이 유사한가?

먼저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침해품을 나란히 놓았을 때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유사한지 판단해야 한다. 침해판단은 사안별로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등록디자인의 창작 포인트를 침해품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더 정확하게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침해품 사진이나 이미지만으로 비교하지 말고, 반드시 침해품을 직접 주문하거나 실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 사이트의 사진과 실제 침해품이 다름에도 침해라고 잘못 단정하여 소모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증거자료를 수집하자!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온라인 사이트의 광고 페이지를 캡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인 사진을 촬영하는 등 침해품에 대한 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3. 경고장을 보낸다!

경고장에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권리자로서의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해야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경고장에 대한 회신기한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침해품과 유사한 내 등록디자인이 존재함을 침해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좋다. 더불어, 불필요한 분쟁보다는 경고장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3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낼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침해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 등과 같은 객관적인 침해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동일한 침해품의 경우에는 무방하겠으나, 침해를 주관적으로 단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강력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디자인 기업의 대응



페코마트의 스낵메모



모조품의 스낵메모

· 이미지 출처 : pecomart.co.kr(좌), ikbensaske.nl(우)

디자인 기업 페코마트가 1년 반을 투자해 만든 '스낵메모'를 국내 대기업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모조품을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페코마트는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KR 30-0640686, KR 30-0630587) 우여곡절 끝에 모조품을 판매한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손해액 배상 및 모조품을 전량 폐기하기로 하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경고장 예시 일부

○○○○년 ○월 ○일

내용증명우편

수신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울시 ○○구 ○○로 12 ○○빌딩

발신인: 주식회사 ○○○
대표자 ○○○
대전광역시 ○○구 ○○로 123

제 목: 디자인등록 제30-0123456호에 기초한 디자인권 침해중지 요청

- 귀사의 일의 변창하심을 기원하며, 부득이하게 귀사에 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함)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디자인등록 제
30-0123456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함)에 대한 침해 중지 요청을 드립
니다.
- 귀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이
하 '이 사건 침해품'이라)를 광고,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침해품의 모
델명은 '○○○○'로 소개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보
유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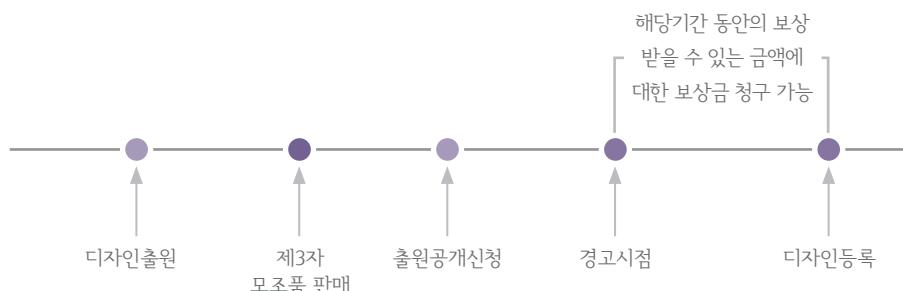
이하 생략

...

2 |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등록전)

만약 출원디자인이 아직 미등록 상태로 심사 중이라면, 특허청에 출원공개신청([p.51](#))을 하여 내 출원디자인을 공개시킨 후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출원 공개가 된 이후에는 경고장을 보내면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등록을 전제로 발생하며, 출원디자인의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취하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원 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신청([p.54](#))을 통해 빠르게 등록결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금청구권 발생기간



3 |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내 디자인과 침해품의 외관이 유사함을 이유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차목)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통상적인 제품디자인의 형태가 아니어야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제품디자인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p.16](#))'로 인정되어야 저작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다.

* 보상금청구권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실시할 경우, 알게된 날부터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밝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보호법 제53조)

1. 내가 출시한 제품이 침해품과 동일한가?

내 제품이 침해품과 동일성이 존재해야 한다.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침해품이 내 제품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코멕스와 락앤락의 물병 디자인 분쟁 사례



코멕스의 물병 디자인

락앤락의 물병 디자인

코멕스는 2007년 6월경부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고, 락앤락은 2008년경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코멕스는 락앤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두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본 결과, 몸통의 형태, 뚜껑의 형태, 밑바닥의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락앤락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물병을 판매한 것에 대해 코멕스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번호 : 2012가합529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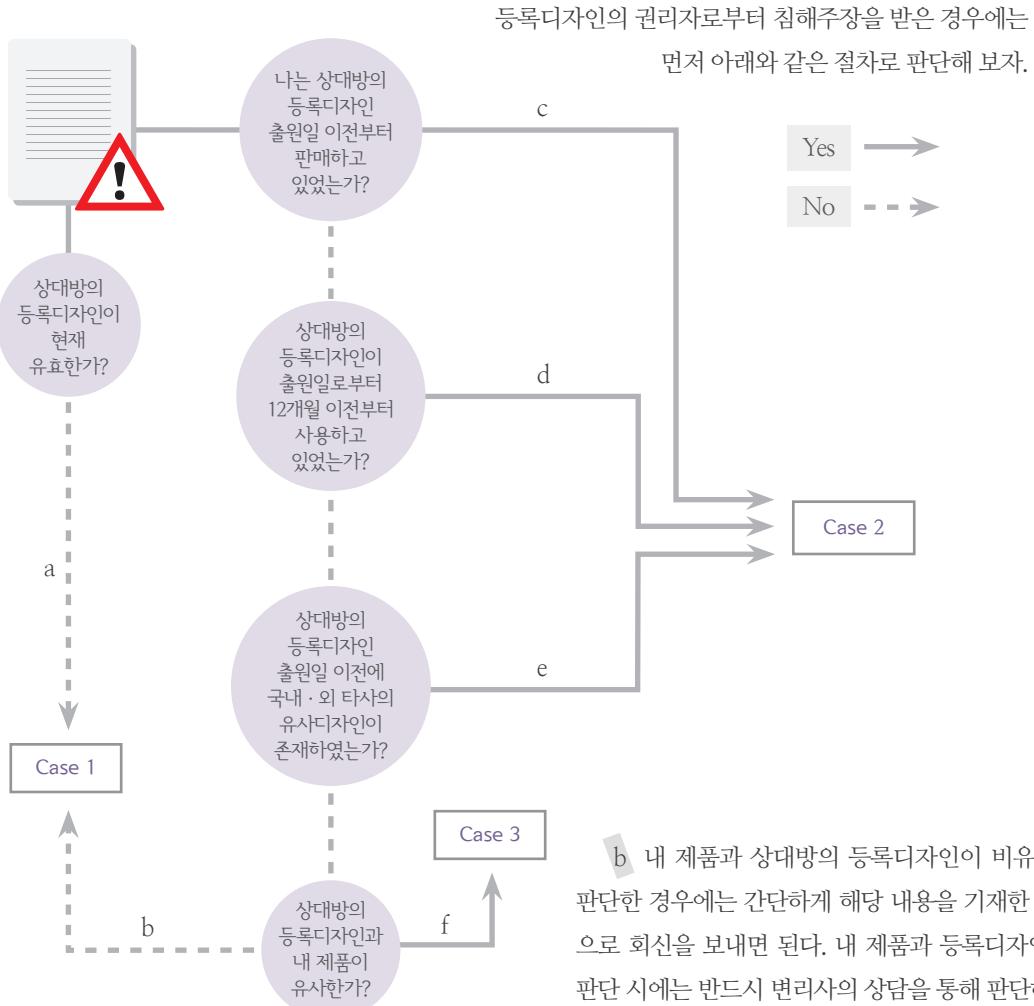
디자인 분쟁 사례 : <http://www.designmap.or.kr/iph/lpFtFrD.jsp?p=269&x=1>

2.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경고장을 발송하자!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모방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침해자가 내 상품 형태를 인식하고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침해품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침해자와 나와의 기존 거래사실이나 내 제품 디자인이 존재함을 침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저작권이 아닌 부정경쟁행위(모방행위)의 경우는 민사적 조치만 가능할 뿐 형사적 조치가 불가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1 | 디자인등록에 기초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



Case 1

a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디자인권이 연차로 미납 등으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간단히 회신하면 된다.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해도 무방하다.

b 내 제품과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보내면 된다.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유사 판단 시에는 반드시 변리사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인(특허사무소 등)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직접 발송을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작성한 침해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와 나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심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Case 2

c 상대방의 디자인출원 이전에 내가 먼저 해당 제품을 팔고 있었다면, 등록디자인과 나의 제품을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간단하게 답변하면 된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 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d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출원일로부터 12개월(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p.24)) 이전의 시점부터 판매나 광고(또는 공개)를 했다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사유가 되므로, 무효심판 등을 통해 등록디자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 반드시 무효화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간단하게 답변하면 된다. 디자인권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의 상품평이나 개인 블로거들이 해당 제품을 올린 사이트 등을 미리 캡처하여, 디자인권자의 디자인이 이미 출원 이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계시 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디자인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디자인권자가 판매(또는 공개)했다면, 등록디자인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다면, 공개된 디자인을 근거로 무효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디자인을 무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등록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 이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를 발견 즉시 날짜가 명시되도록 캡처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f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도 없고 침해가 명확하다고 판단된다면 디자인권자와의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디자인권의 매입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다르게 디자인을 변경하고 재고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도 있다. 설사, 침해임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경고장에 대한 답변 시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왜 침해인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 침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알려달라는 회신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디자인권자의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판매할 경우, 침해에 고의의 의사가 인정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다.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도 디자인권리가 있는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이 있다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등록디자인과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디자인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엔 내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해두었다면 경찰 조사 시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경고장도 받지 못하고 바로 고소당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디자인 침해에 의한 형사처분은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받을 때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언급해야 한다.

2 | 출원 중(등록 전)인 디자인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받은 경우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나 현재 출원 중인 디자인을 근거로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원일보다 앞서 내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출원 중인 디자인과 내 제품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선행디자인을 근거로 할 경우, 출원 중인 디자인이 거절될 가능성과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등록된 디자인의 무효화는 출원 중인 디자인의 거절보다 훨씬 어렵고 엄격하다. 따라서 일단 등록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정보제공제도를 활용하여 상대측 출원디자인의 등록을 저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3 |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발신자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경쟁행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디자인이 동종의 상품군의 일반적인 형태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즉, 경고장 발신자의 제품디자인과 내가 판매하는 제품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동종 제품군 내에서 지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에 불과하다면 이를 주장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디자인 분쟁 사례



글락소 오리지널
'세레타이드500'

노바티스 제네릭
'에어플로잘 포스피로500'

· 이미지 출처 : gsk-korea.co.kr(좌), sandoz.kr(우)

글락소가 자사의 '세레타이드500'과 노바티스 제네릭의 '에어플루잘 포스피로500'이 보라색 흡입기 용기로 유사하기 때문에 거래자나 수요자가 혼동할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의약품의 특정 색상과 모양이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정보제공제도 : 현재 출원 중인 디자인이 거절되어야 하는 근거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심사관에게 해당 출원디자인의 심사에 제출한 근거자료를 함께 참작해달라는 요청서로, 주로 디자인출원 이전에 공개된 유사한 디자인을 근거로 하여, 해당 출원디자인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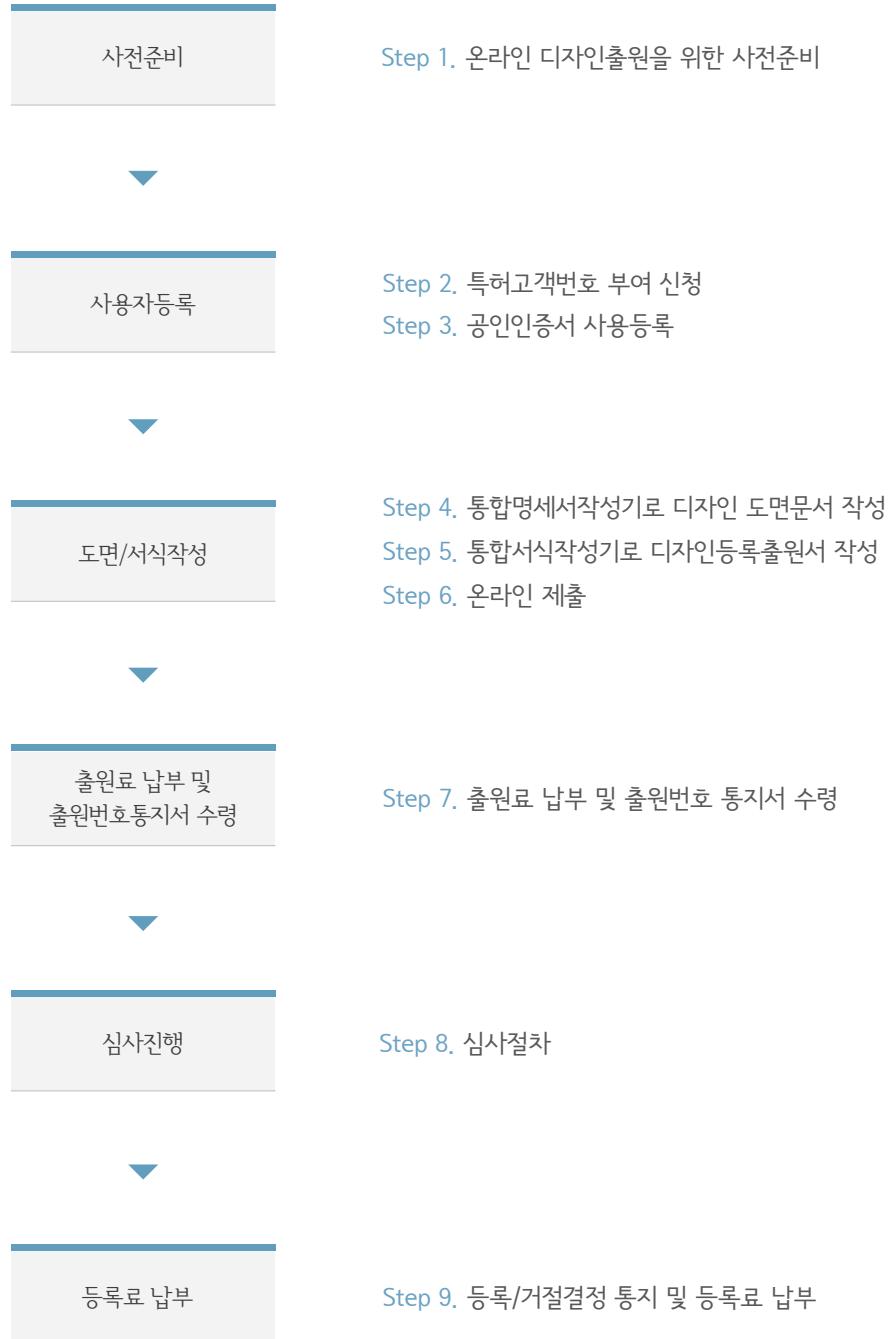
5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요건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형식에 따라 서류 작성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디자인을 출원하면 안정적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디자인권리 보호가 우선순위에 밀려 디자인출원에 많은 비용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비용 부담으로 여러 디자인 중 몇 개만 선별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출원을 포기해 버린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에 직접 도전해보자!

온라인 디자인출원절차



온라인 디자인출원은 특허로에서 진행

<http://www.patent.go.kr>

특허고객상담센터

디자인출원절차, 디자인보호제도 설명

이용시간 : 평일 9시 ~ 18시

★ **1544-8080**

특허청 원격상담 서비스

전자출원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용자
PC화면을 원격으로 접속하여 오류
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

모바일 특허고객 상담센터
www.kipi.or.kr/iproconsult



전화걸기

Yellow ID @특허고객상담센터 친구추가하세요.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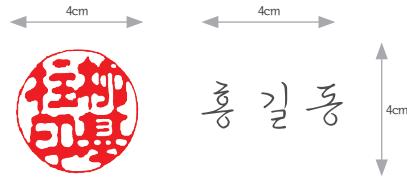
Step 1. 온라인 디자인출원을 위한 사전준비

온라인 디자인출원 시작에 앞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위한 파일을 준비하고, 도면/서식작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및 디자인출원용 도면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1 |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위한 준비

a. 서명 또는 도장 이미지 파일 준비

- 개인 :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
- 법인 : 인감 이미지 파일
- 파일 조건
 - 해상도 : 200dpi 권장(200 ~ 300dpi)
 - 파일형식 : JPG 이미지
 - 크기 : 가로 4cm x 세로 4cm 이내



b. 특허고객 공인인증서 준비

- 은행이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2 | 출원서 작성을 위한 준비

a. 전자출원SW(소프트웨어) 설치

- 통합설치(전문가용/초보자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

전자출원SW 설치 국내출원신청을 위해 먼저 문서작성/열람기를 다운로드받은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합설치

구분	제공내역	다운로드
전문가용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용 SW를 일괄 통합 설치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경우에는 아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설치SW : 서식작성기(NiGaps), 첨부서류입력기, 통합명세서작성기, 통지서발급기, 서설복죽작성기, MM서식작성기, DM서식작성기	다운로드
초보자용	전자출원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SW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 설치SW : 통합서식작성기(Pheaps), 통합명세서작성기, 통지서열람기	다운로드

*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 설치

b. 디자인출원용 도면 (p.84)

- 파일 조건
 - 해상도 : 300 ~ 400dpi
 - 파일형식 : JPG, TIF 이미지 또는 3D 도면 파일
 - 크기 : 가로 16.5cm x 세로 22.2cm 이내

Step 2.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발급을 받아야 하며,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출원인마다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1 |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특허청에 처음으로 출원절차를 밟고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등록
특례번호 >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 특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진행 가능
 - 온라인으로 출원 진행 시 '특히 고객번호 부여 신청' 선택
 - 도장이나 서명은 둘 중 하나만 첨부
 - 본인증명서류: 행정정보 사용 동의여부에 동의한 경우 첨부서류 생략 가능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처 : [특허법시행규칙 제 74 호 서식] [예시]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출원인구분</td> <td>국내자연인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3">• 주민 (법인) 등록번호 <input type="text"/></td> </tr> <tr> <td colspan="2">성명 (명칭)</td> <td>국문 <input type="text"/></td> </tr> <tr> <td colspan="2"></td> <td>영문 <input type="text"/></td> </tr> <tr> <td colspan="3">• 인감도장/서명 <input type="text"/></td> </tr> <tr> <td colspan="3">• 우편번호 <input type="text"/> 도로명검색</td> </tr> <tr> <td colspan="3">주 소</td> </tr> <tr> <td colspan="3">• 국문 <input type="text"/> • 영문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전기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주소정보 및 통행의인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신청 ○신청안함</td> </tr> <tr> <td colspan="3">• 주소자동변경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3">송달주소</td> </tr> <tr> <td colspan="3">우편번호 <input type="text"/> 도로명검색</td> </tr> <tr> <td colspan="3">• 주소와 송달주소가 동일한 경우 송달주소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td> </tr> <tr> <td colspan="3">국문 <input type="text"/></td> </tr> <tr> <td colspan="3">• 시도/국적 <input type="text"/> 시도국적을 주소와 일체(국적코드와 국내코드 중 표시되는 코드)로 주십시오.</td> </tr> <tr> <td colspan="3">•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휴대폰번호호를 입력 바랍니다.</td> </tr> <tr> <td colspan="3">010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 <input type="text"/> 이메일을 입력하니면 연락처 납부(15일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td> </tr> <tr> <td colspan="3">이메일 <input type="text"/> 수취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수령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3">단독출원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수유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3">출원번호 <input type="text"/> 10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999 이전 출원번호의 출판번호)</td> </tr> <tr> <td colspan="3">•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 사항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저작권 및 권리법 제19조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처리자에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고지사항이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td> </tr> <tr> <td colspan="3">(행정정보를 통하여 등록되지 않을 경우 해당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는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td> </tr> <tr> <td colspan="3">○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3">• 이해일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 본인의 이해일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td> </tr> <tr> <td colspan="3">• 휴대폰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 본인의 휴대폰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td> </tr> <tr> <td colspan="3">코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성 명 <input type="text"/></td> </tr> <tr> <td colspan="3">대리인 정보 증명서류 <input type="checkbox"/> 앞이보기 <input type="checkbox"/> [추가] [삭제]</td> </tr> <tr> <td colspan="3">• 도움말의 출원인 유형별 첨부서류 안내 참고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 출원인구분		국내자연인 <input type="checkbox"/>	• 주민 (법인)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성명 (명칭)		국문 <input type="text"/>			영문 <input type="text"/>	• 인감도장/서명 <input type="text"/>			• 우편번호 <input type="text"/> 도로명검색			주 소			• 국문 <input type="text"/> • 영문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전기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주소정보 및 통행의인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신청 ○신청안함			• 주소자동변경 <input type="checkbox"/>			송달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도로명검색			• 주소와 송달주소가 동일한 경우 송달주소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문 <input type="text"/>			• 시도/국적 <input type="text"/> 시도국적을 주소와 일체(국적코드와 국내코드 중 표시되는 코드)로 주십시오.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휴대폰번호호를 입력 바랍니다.			010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 <input type="text"/> 이메일을 입력하니면 연락처 납부(15일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input type="text"/> 수취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수령 <input type="checkbox"/>			단독출원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수유 <input type="checkbox"/>			출원번호 <input type="text"/> 10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999 이전 출원번호의 출판번호)			•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 사항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저작권 및 권리법 제19조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처리자에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고지사항이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하여 등록되지 않을 경우 해당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는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이해일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 본인의 이해일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휴대폰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 본인의 휴대폰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코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성 명 <input type="text"/>			대리인 정보 증명서류 <input type="checkbox"/> 앞이보기 <input type="checkbox"/> [추가] [삭제]			• 도움말의 출원인 유형별 첨부서류 안내 참고 <input type="checkbox"/>		
• 출원인구분		국내자연인 <input type="checkbox"/>																																																																																	
• 주민 (법인)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성명 (명칭)		국문 <input type="text"/>																																																																																	
		영문 <input type="text"/>																																																																																	
• 인감도장/서명 <input type="text"/>																																																																																			
• 우편번호 <input type="text"/> 도로명검색																																																																																			
주 소																																																																																			
• 국문 <input type="text"/> • 영문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전기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주소정보 및 통행의인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신청 ○신청안함																																																																																			
• 주소자동변경 <input type="checkbox"/>																																																																																			
송달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도로명검색																																																																																			
• 주소와 송달주소가 동일한 경우 송달주소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문 <input type="text"/>																																																																																			
• 시도/국적 <input type="text"/> 시도국적을 주소와 일체(국적코드와 국내코드 중 표시되는 코드)로 주십시오.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휴대폰번호호를 입력 바랍니다.																																																																																			
010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 <input type="text"/> 이메일을 입력하니면 연락처 납부(15일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input type="text"/> 수취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수령 <input type="checkbox"/>																																																																																			
단독출원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수유 <input type="checkbox"/>																																																																																			
출원번호 <input type="text"/> 10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999 이전 출원번호의 출판번호)																																																																																			
•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 사항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저작권 및 권리법 제19조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처리자에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고지사항이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하여 등록되지 않을 경우 해당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는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이해일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 본인의 이해일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휴대폰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 본인의 휴대폰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코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성 명 <input type="text"/>																																																																																			
대리인 정보 증명서류 <input type="checkbox"/> 앞이보기 <input type="checkbox"/> [추가] [삭제]																																																																																			
• 도움말의 출원인 유형별 첨부서류 안내 참고 <input type="checkbox"/>																																																																																			

2 | 특허고객번호 발급

특허고객번호는 신청 즉시 문자와 이메일로 전송

- 특허고객번호 형식 : 4-2016(연도)-1234567(일련번호)

Step 3. 공인인증서 사용등록

공인인증서*는 전자문서 제출 시 전자문서 서명을 수행하고 제출문서의 보안을 위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공인 인증서	
공인인증서 PCT인증서	
설명	
전자서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주),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주), 한국전자인증(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등록 가능한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전자거래법률 공인인증서(현행과 동일) •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은행을 공인인증서(현행과 동일)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특허청전용 공인인증서(신규)	
* 등록취소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된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재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증설, 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된 경우 처리절차 안내 ①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새로운 인증서를 이용하여 재등록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를 보기, 삭제, 검증, 암호변경, 정보갱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디스크(USB메모리)로 저장매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등록취소	
재등록	
인증서관리	

*
특허로 > 사용자등록/변경
> 인증서사용등록

특허고객번호조회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데, 특허고객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특허고객/대리인 번호조회* 진행

특허고객/대리인 번호조회	
※ > 사용자등록/변경 > 출원인/대리인 조회 > 특허고객/대리인번호조회 출원번호 또는 출원인/대리인 성명을 기준으로 특허고객/대리인번호조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 도움말"/>	
검색구분	<input type="radio"/> 출원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출원인/대리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원인(내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원인(외국인)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영문) <input type="text"/>
주민(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특허로 > 사용자등록/변경
> 출원인/대리인조회 > 특허고객/대리인번호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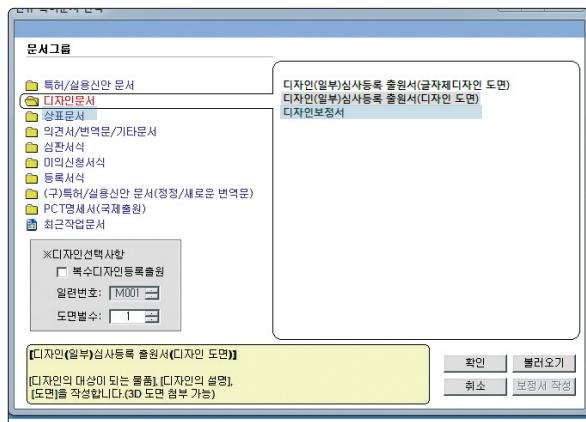
Step 4. 통합명세서작성기로 디자인 도면문서 작성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p.70](#))해야 하며, 하나의 디자인 도면문서에 하나의 디자인만 출원(한 벌 물품의 디자인, 복수디자인의 경우 예외)해야 한다.

1 | PC에 설치된 아이콘(통합명세서작성기) 클릭

2 |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 종류에 맞는 서식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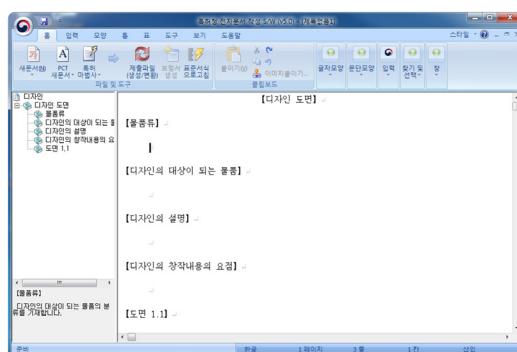
- 디자인문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디자인 도면) 선택
 - 글자체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글자체디자인 도면) 선택



tip. 디자인 도면문서 작성 시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최근에 등록된 동일·유사한
물품을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3 | 디자인 도면문서 작성

- 디자인 도면문서에 첨부한 도면 및 설명에 의해 디자인보호범위가 정해짐
 - 디자인 도면문서는 특허청 심사기준([p 74](#))에 맞춰 작성



4 | 디자인 도면문서를 전자문서로 저장

- #### • 파일혁신

익바저장: HIT 파일로 저장

제출용점장(XMI 변환): H17 파일로 저장

* XML 변환 방법 : 도구 > XML 변환 선택

특허청 심사기준에 맞는 디자인 도면문서 작성 TIP

* 이자브(YZAB)의 흔들의자 디자인을 사례로 디자인 도면문서 작성

1 | 물품류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속하는 그룹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로카르노 분류코드*(p.96)의 '류'를 찾아 기재한다.

'흔들의자' 디자인의 물품류 찾는 방법

검색조건	
국어(KOREAN) : 의자	영어(ENGLISH) :
국제분류 : - 검색	
총 : 104건, 7/11(Page)	<input type="checkbox"/> 문의사항 및 질의 <input type="checkbox"/> 도용말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input type="checkbox"/> 로카르노 분류표
물품명칭(국어)	물품류 분류코드 물품명칭(ENGLISH)
차량용 의자들판	06 06-01 Back supports for vehicle seats
차량의자용 팔걸이	06 06-01 Elbow rests for vehicle seats
치과치료용 의자	06 06-01 Arm chairs (Dentists' -)
치과치료용 팔걸이	06 06-01 Dentists' arm chairs
치료용 의자	06 06-01
쿠션의자	06 06-01 Pouffs [seats]
팔걸이의자	06 06-01 Arm chairs
할공기용 의자	06 06-01
휴식용 긴 의자 [데이버드]	06 06-01 M? ridennes
흔들의자	06 06-01 Rocking-chairs

- ① 국어나 영어에 물품명칭으로 검색 : [국어]란에 '의자'로 검색
- ② 물품류 찾기 : '흔들의자'의 물품류는 '06'임
- ③ [물품류]란에 '제6류'라고 기재 ('제06류'로 기재 시 오류 발생)

2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을 작성한다.

-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 고시*」에 나온 명칭에서 하나의 물품 지정
- 만일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 고시」에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기재
- 한 개의 디자인에 한 개의 물품명칭만 기재(다만, 다른 물품이 부설된 경우는 예외)
ex. 스마트폰용 거치대 및 스피커(X) → 스피커(O)

→ 스마트폰용 거치대를 겸비한 스피커(O)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그 물품의 '전체디자인'의 명칭을 기재
ex. 컵의 손잡이(X) → 컵(O), 전화기 버튼(X) → 전화기(O)
- 화상(GUI) 디자인은 '화상디자인(또는 아이콘)이 표시된 OOO(기기명)'으로 기재
ex.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X)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O)
아이콘(X) → 아이콘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O)

*
특허로 화면 우측 > 관련서비스 >
분류코드 검색 > 디자인분류코드

*
특허청(www.kipo.go.kr) > 책자/통
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물품류별 물품 목록 고시 > 첨부
파일 다운로드

3 | 디자인의 설명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좁아지므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 재질 또는 크기 설명, 디자인 사용방법 설명, 도면 표현 방법에 대해 작성

ex. 재질은 목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ex. 본 물품은 물건 수납이 가능한 유아용 흔들의자임

ex. [도면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1.2]는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를 표현한 것이고, … [참고도면1.1]은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것임

-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표현한 방법에 대해 설명

ex.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며,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아님

ex.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ex. 1점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KR 30-0822996 KR 30-0822995

4 |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특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작성해도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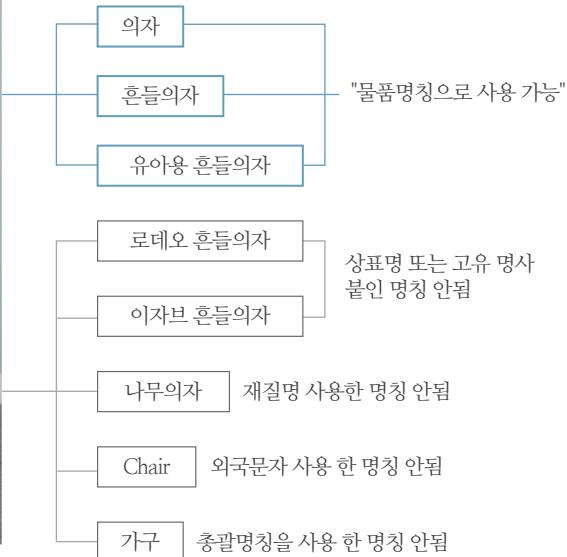
ex. "OOOO(물품명칭)"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 작성 예시





· 이미지 출처 : www.yzab.co.kr



5 | 디자인 도면 작성

디자인출원 시 제출된 도면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권리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a. 도면

도면 자율화에 따라 디자인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순서로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동일한 축척의 육면도 및 사시도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확대도, 전개도, 분해사시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됨

-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 순의 항목으로 작성
- 한 개 이상의 도면만 제출해도 무방하나, 생략한 도면에 대한 이유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작성

b. 부가도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분해사시도를 부가도면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디자인권리범위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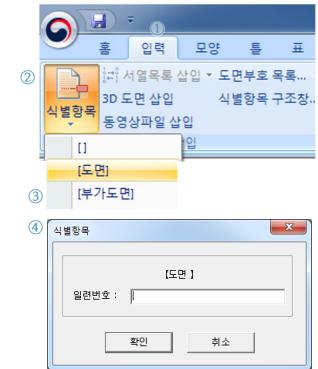
- [부가도면1.1], [부가도면1.2] … 순으로 작성

c. 참고도면

디자인 용도, 사용상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도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디자인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도면1.1], [참고도면1.2] … 순으로 작성

[도면 식별항목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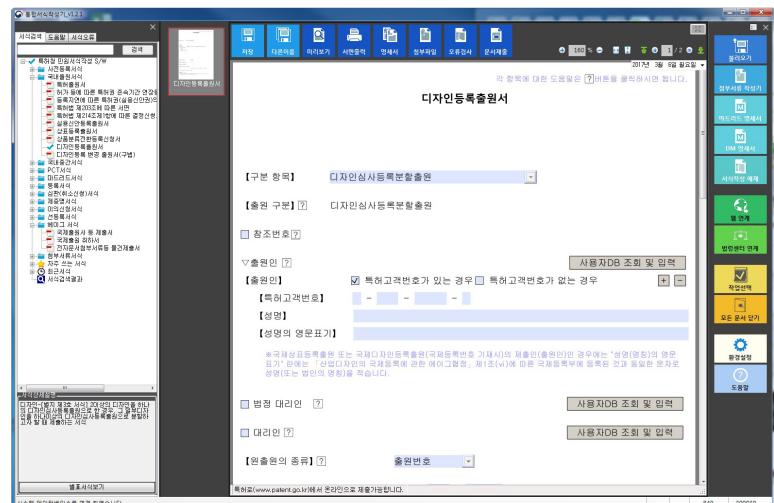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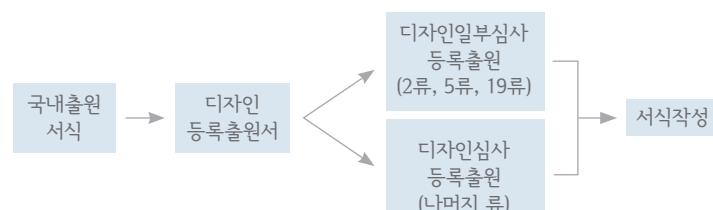


Step 5. 통합서식작성기로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1 | PC에 설치된  아이콘(통합서식작성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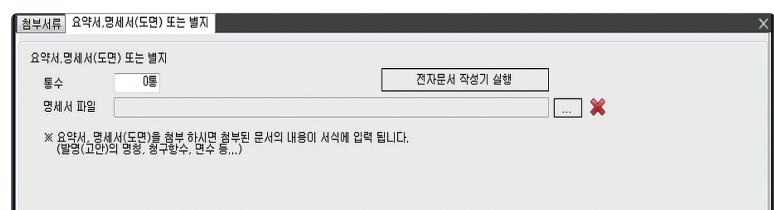
2 | 서식 선택

tip. 디자인일부심사란?
2류, 5류, 19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물품에 해당되어
심사관의 신규성, 창작성 판단없이
기본요건심사만 진행하여 출원에서
등록까지 1~3개월 걸림(p.55)



3 | step 4에서 작성한 디자인 도면 문서(hfz 파일) 첨부

디자인 도면 문서 첨부 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 및 물품류 자동 입력



Step 5. 통합서식작성기로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4 |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출원인

- 개인 또는 법인, 국가기관 등의 특허고객번호 필요
- 공동 출원인인 경우 지분 표기 가능
지분표기 시 지분양정서 제출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 1디자인 :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선택
- 복수디자인 :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에 출원하는 경우 선택 (p.46)

물품류 (p.74)

- 디자인 도면문서에서 작성한 내용
동일하게 작성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74)

- 디자인 도면문서에서 작성한 내용
동일하게 작성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p.46)

- 관련디자인출원인 경우 '관련디자인'을 선택 후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표기
- 관련디자인출원이 아닌 경우 '단독디자인' 선택

특허료 미리 계산해보기

- 등록 기간 별로 등록료를 자동 계산하여 예상납부 비용 확인 가능

첨부서류

- 제출할 서류 파일이 있으면 첨부서류란을 통해 업로드

디자인등록출원서

"부분디자인 여부"는 최초출원일자가 2001년 7월 1일 이후건에 대해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구분 항목】 디자인상사등록출원

【출원 구분】 디자인상사등록출원

□ 참조번호

△출원인

【출원인】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 법정대리인 등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 대리인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물품류】 제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찾기

□ 부분디자인

□ 우선권주장

□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창작자 출원인과 동일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창작자】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특허고객번호】 4 - - -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수수료】 온라인(FD) 서면

요율표

【출원료】	94,000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0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0 원
【우선권주장료】	0 원
【합계】	94,000 원
【감면사유】	현재감면대상
【감면후 수수료】	94,000 원
※ 원출원이 디자인인 경우에는 출원료가 다르게 계산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특허(등록)료 미리 계산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부분디자인 여부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시(p.42) 선택
- 화상(GUI) 디자인(p.90) 출원 시 반드시 부분디자인 선택

우선권 주장 (p.29)

- 해외에 선 출원 후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국에 디자인출원하는 경우 가능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 입력

- 처음 공개한 날짜와 공개 방법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시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가 나타나 있는 증명서류 제출
- 디자인출원 시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주장 가능 (p.24)
- 2017년 9월 22일 이후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가능

창작자 (p.30)

- 창작자에는 반드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함
- 출원인과 같을 때 '출원인과 동일' 버튼 클릭
- 출원인과 다를 때 창작자 정보 입력
- 창작자 추가, 정정 :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전 까지 가능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p.79)

- 디자인출원공개 및 비밀디자인신청 시 해당 내용 선택

수수료 (p.83)

- 면제감면대상 클릭하여 대상자 확인
- 감면 대상자의 경우 서류 제출
특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정보 안내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p.81)

-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선택

5 | 디자인등록출원서 저장

- 파일 형식
 - 일반 저장 : PDF 파일명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 입력 작성 예시

2015. 10. 28. 디자인공지증명제도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
디자인등록출원서(제작자 기여도증명)		
공지증명번호	2015-B03-0000101	출력일 : 2015년 10월 28일
디자인의 명칭	유아용 훈돌의자	
디자인의 분류	제품 디자인) 주제설비용품	
	› 의자 및 걸상	
	› 의자(유아용 의자)	
디자인 창작인	YAZAB	디자인 창작일 2015.08.01
디자인 설명	유아용 훈돌의자로서 훈돌의자의 기능 외에도 개발부터 입안에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 YZAB는 2015년 9월 16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신제품을 공개하고, 디자인공지증명제도(p.99) 신청 (공지증명번호 : 2015-B03-0000101)

• 출원일(2015년 11월 13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해야 함

ex. 공개형태는 '공지증명제도 신청', 공개일자는 '2015년 9월 16일'로 작성 후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증명서'를 첨부서류란에 첨부

※ 17년 9월 22일 이후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 가능

Step 6. 온라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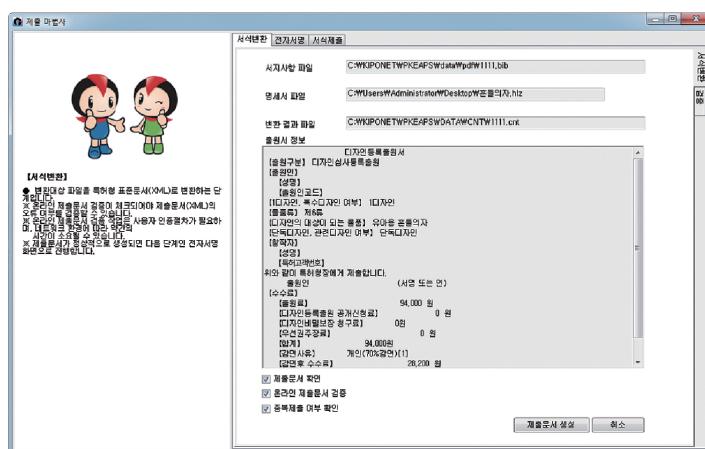
서식작성기 프로그램 상단에 '문서제출' 클릭하여 온라인 제출 마법사를 시작한다.



1 | 특허청 표준문서(XML)로 변환하는 단계

- 제출문서 오류여부 확인*

'상담요청'을 선택해 상담번호를 부여받은 후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전화 > 8번 선택 > 상담번호 입력 > # 버튼 선택



2 | 각 출원인/대리인에 대해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 각 출원인에 대해 전자서명 수행 : 공동 출원인일 경우 모두 서명
 - 중복제출여부 확인

3 | 전자서명된 파일을 제출파일로 생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제출'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특허청에 접수
 - 제출결과는 '제출결과조회' *'를 통해 확인 가능

* 특허로 > 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

Step 7. 출원료 납부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1 | 출원료 납부

- 온라인 제출결과 안내창에서 수수료(원)를 클릭하면 납부고지서 출력 가능

사건번호 권리	서류명	명칭	수수료(원)	접수결과
30-2015-XXXXXXX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서	0000	94,000	접수완료

- 출원료는 인터넷 지로 또는 인터넷 뱅킹, PG서비스에서 납부 가능
 - 지로 사이트 : www.giro.or.kr > 국세/법칙금 > 특허수수료에서 납부
 - 인터넷 뱅킹 :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납부
 - PG서비스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 납부 > 특허수수료 납부
> 납부방법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후 납부
- 서류 제출 후 다음 날까지 출원료 납부 : 납부기한을 넘는 경우 다음 절차가 자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방법

- * 자동납부 신청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 사전에 출원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농협)로 자동납부 신청*
 -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 선택 시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항목 선택
 - 특허청에서 사전등록한 계좌에서 국고로 자동계좌이체 진행

2 |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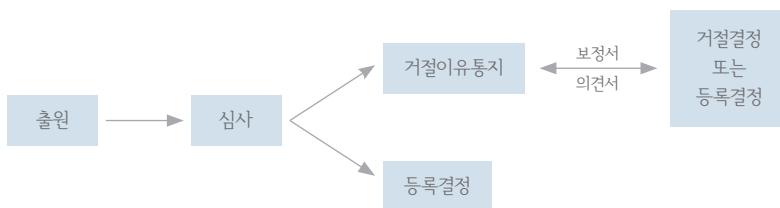
- 온라인 제출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출원번호통지서 출력 가능

* 온라인제출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미발송

Step 8. 심사절차

특히 청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의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통보한다. 만약 거절이유가 발견되었다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하고 기간을 정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면 대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심사관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정하거나 거절이유에 반박하는 의견을 '보정서' 또는 '의견서'에 명확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

ex. 이 디자인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물품의 구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여 출원되지 않았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당한 물품(예: ○ ○ ○)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정서 작성 Tip

심사관님의 의견에 따라 OOO으로 물품의 명칭을 보정서에 제출

ex. 이 디자인등록출원은 붙임의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제000000000호 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선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견서 작성 Tip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의 형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의견서/ 보정서 서식 작성
서식작성기 > 국내중간서식 > 디자인
> 의견(답변, 소명)서 or 보정(절차보
완)서 선택

Step 9. 등록/거절결정 통지 및 등록료 납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디자인권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디자인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다.

만일,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 등록료 정상 납부기간 : 등록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납부기간 : 등록료 정상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산세 부과
- 소멸 디자인권 회복 신청기간 :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디자인을 실시 중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정상금액의 2배 가산세 부과



온라인 디자인출원 / 등록 수수료

(2017년 5월 기준)

		전체심사 (1디자인당)	일부심사 (1디자인당)	19세이상 30세 미만, 65세 이상(85% 감면)	중소기업·개인 (70% 감면)
출원 수수료		94,000원	45,000원	14,100원 / 6,750원	28,200원 / 13,500원
설정등록료(1~3년)		75,000원	75,000원	11,250원	22,500원
연차 등록료	4~6년	매년 35,000원	매년 34,000원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경우,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50% 감면	
	7~9년	매년 7만원	매년 34,000원		
	10~12년	매년 14만원	매년 34,000원	※ 중견기업의 경우, 4~9년차 등록료의 30% 감면	
	13~20년	매년 21만원	매년 34,000원		

※ 출원료 및 등록료 개인 감면의 경우 출원인(권리자)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면제 및 감면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로(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참조

디자인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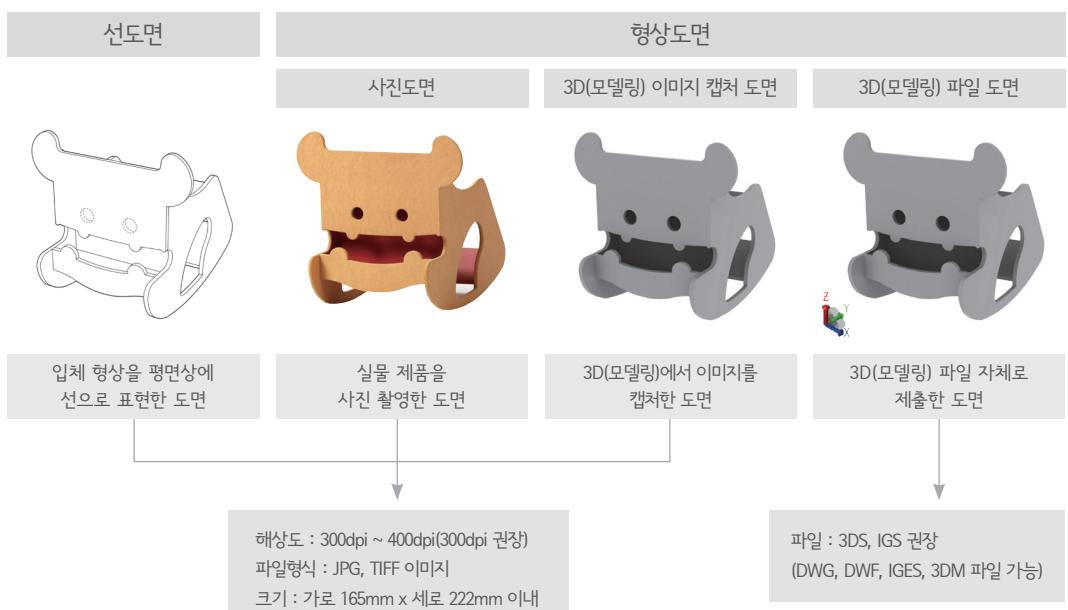
작성

요령

도면 작성에 익숙한 디자이너라도 디자인출원 시 특허청에서 정한
도면 작성 기준에 맞춰 도면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잘
못된 도면 제출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특허청 심사기준에 맞
춰 꼼꼼히 준비해보자.

도면 제출 방식

- 디자인 도면은 네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파일 형식을 선택하여 도면 제출
선도면, 사진도면, 3D(모델링) 이미지 캡처 도면, 3D(모델링) 파일 도면
- 한 개의 디자인 출원에는 한 가지로 통일된 방식의 도면 사용(참고도면 예외)



※ 3D(모델링) 파일 도면은 최초로 한국 특허청에서 실시한 도면 제출 방식이며, 유럽연합(EUIPO)에서도 3D 파일 도면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디자인 도면 작성 시 체크포인트

- 도면 상호간에 **축척**이 일치한지 확인
- 도면 상호간에 **형상선**이 일치한지 확인
- 도면 상호간에 **색상**이 일치한지 확인
- 도면 **선명도** 확인
- 도면 내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2

도면 작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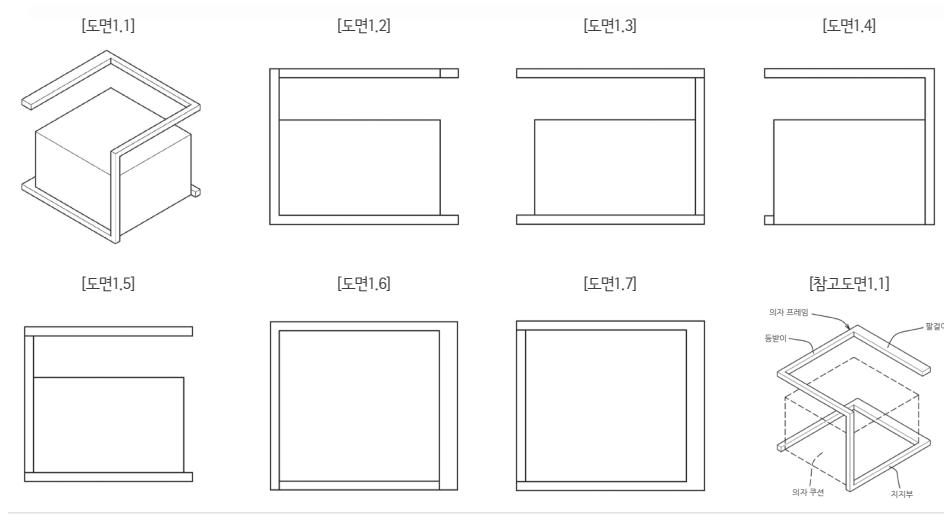
1 | 입체디자인 도면 작성

- 한 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해도 되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축척의 육면도와 사시도 제출
- 도면이 대칭인 경우 반대편의 도면은 생략 가능. 생략한 도면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본 도면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가도면 또는 참고도면으로 첨부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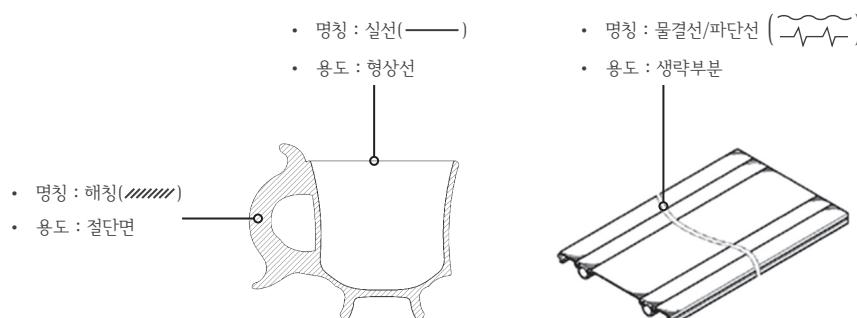
a 선도면

- 도면 상호간에 형상선이 일치한지 확인
- 도면 상호간에 축척이 일치하도록 이미지 추출

의자 디자인 선도면 예시



도면 작성 시 선 사용법



b 사진/3D(모델링) 파일 캡처 도면

- 배경은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무채색으로 표현
- 도면의 색상이 상호간에 다른 경우 거절 사유
-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과 모양을 잘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 (마네킹, 옷걸이 등)을 이용 가능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관련 내용 작성
ex. [디자인의 설명] 마네킹 부분은 디자인에서 제외함



사무용압정 디자인 3D(모델링) 파일 캡처 도면 예시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참고도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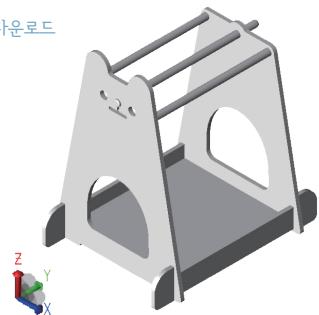


KR 30-0777222

c 3D(모델링) 파일 도면

- 3D Viewer(CADian)^{*}에서 모델링 도면이 3차원의 돌려보기 상태로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
- 와이어 프레임(wireframe) 상태가 아닌 셰이딩(shading) 상태로 파일 제출
- 도면이 깨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도면 작성
- 투명부가 있다면 투명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

*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전자출원 SW설치 > 기타 SW > 3D Viewer 다운로드



KR 30-2015-0056589

2 | 평면디자인 도면 작성

a) 직물지, 포장지와 같은 평면 디자인이 앞, 뒤 모두 패턴이 있을 경우, 앞면, 뒷면 이미지 제출

[도면1.1] 앞면



[도면1.2] 뒷면



KR 30-0666034

b) 뒷면에 모양이 없는 경우 앞면 이미지만 제출



KR 30-0816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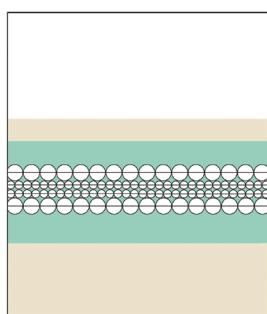
KR 30-0802613

c)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은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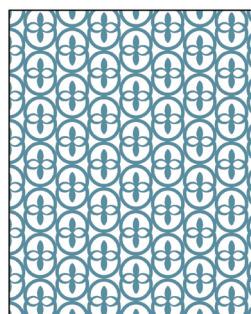
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도록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설명 기재

ex.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는 전폭이고 좌우는 연속반복임

ex.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연속반복임



KR 30-0749519[M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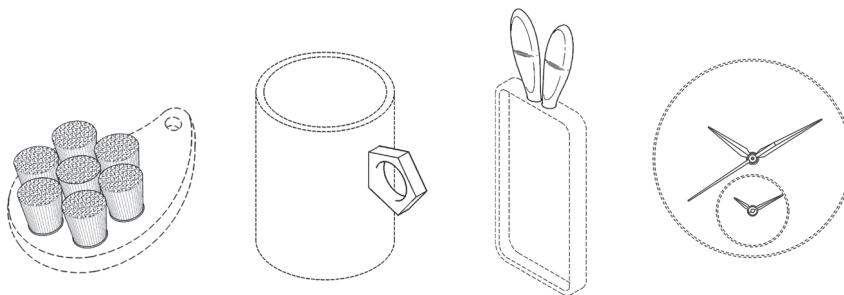
KR 30-0745754[M01]

3 | 부분디자인 도면 작성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명확히 표현
- 도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p.75)

a 선도면

-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 그 외의 부분은 '점선(-----)', 부분디자인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일점쇄선(-----)'으로 표현
- ex. [디자인의 설명]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며,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아님



KR 30-0670734

KR 30-0775793

KR 30-0600219

KR 30-0794756

b 형상 도면

-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외의 부분은 '무채색'으로 구분하여 표현
 - 디자인의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채색'으로 표현
- ex. [디자인의 설명]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무채색'으로 구분



KR 30-0784510

'유채색'으로 구분



KR 30-0692376



KR 30-0780728



KR 30-2015-0056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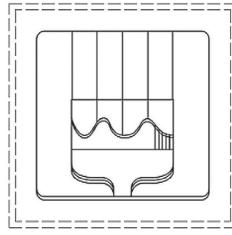
4 | 화상(GUI) 디자인 도면 작성

화상(GUI) 디자인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모니터, TV, 휴대폰 등 제품에 적용된 상태로 도면을 작성하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같은 형상의 화상(GUI) 디자인이어도 제품이 다른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제품의 구분 없이 모든 정보화기기를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명칭([p.74](#))을 사용하고, (a)의 우측 이미지(KR 30-0821767)와 같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두 개의 점선으로 된 테두리를 가진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a 제품의 형상 내부에 이미지 배치



KR 30-0623522



KR 30-0821767

b 이미지가 두 부분으로 분리된 경우, 일점쇄선(-----)으로 구획하여 보호범위 설정

[도면1.1]



[참고도1.1]



KR 30-0760470

c 움직임이 있는 화상(GUI) 디자인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시퀀스마다 캡처해

[도면A O.O], [도면B O.O], [도면C O.O] …로 나누어 각각 도면 제출

[도면A 1.1]



[도면B 1.1]



[도면C 1.1]



[도면D 1.1]



[도면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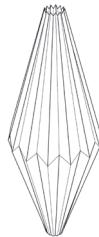
KR 30-0807840

5 |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도면 작성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의 경우 변화 전·후 과정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a)하거나, 변화 전·후 과정의 디자인을 모두 포함해 하나의 출원서에 표현하는 방법(b)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변화 전의 디자인과 변화 후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출원서에 표현된 변화 전과 변화의 패턴(동작 내용), 변화 후의 형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등록(a)받는 것보다 디자인권리범위가 더 좁아지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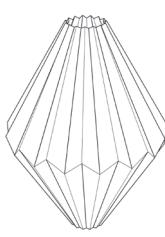
a 변화 전·후 과정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

[변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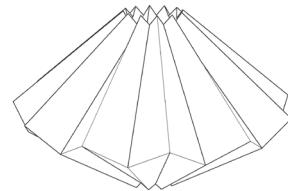
KR 30-0689799

[변화 후 1]



KR 30-0689799-0001

[변화 후 2]



KR 30-0689799-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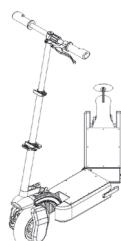
b 하나의 출원서에 변화 전, 변화 과정, 변화 후의 디자인 도면을 모두 포함하여

[도면A O.O], [도면B O.O], [도면C O.O] … 로 나누어 각각 도면 제출

[도면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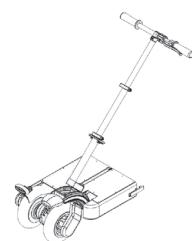
[도면B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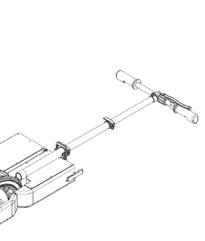
[도면C 1.1]



[도면D 1.1]



[도면E 1.1]



KR 30-0804679

6 |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도면 작성

둘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 사용되지만 개별적으로도 디자인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의 경우, 구분되는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출원(a)하는 것이 한 벌 물품의 디자인([p.48](#))으로 출원(b)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a 세트지만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물품 한 개당 하나의 출원절차를 진행한 디자인

싱글족을 위한 자기 그릇 선물세트



THE BIRD



반면, 둘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형태적 · 기능적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b)하면 된다. 그러나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출원했을 때 (a)보다 권리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b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한 조의 도면을 제출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도면A 1.1]
저고리



[도면B 1.1]
치마



[도면C 1.1]
앞치마



KR 30-0482833

-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하나의 통일된 형상 ·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한 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한 조씩의 도면을 제출

한 벌의 커피세트

[도면A 1.1]
한 벌의 커피세트



[도면B 1.1]
용기



[도면C 1.1]
접시



KR 30-0808096

부록

로카르노 분류코드 제11판 기준

- 디자인 심사등록물품류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물품류

1류	2류	3류	4류
식품 빵, 과자류, 과일, 육류, 유제품, 동물용 사료 ...	의류 및 잡화 속옷, 의복, 모자류, 신발류, 넥타이, 네커chief ...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품 핸드백, 여행가방, 지갑, 우산, 지팡이, 부채 ...	브러시 제품 청소용 · 욕실용 · 의류용 · 조리용 · 미술용 솔 ...
5류	6류	7류	8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실류, 레이스, 자수, 리본, 장식용 수술, 직물, ...	가구 및 침구류 의자, 침대, 테이블, 커튼, 수납가구, 옷걸이, 담요 ...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가정용품 도자기, 유리제품, 조리용기기, 나이프, 포크 ...	공구 및 철물류 드릴, 스크류드라이버, 기 타의 도구 및 기구 ...
9류	10류	11류	12류
물품 운송 · 처리용 포장 및 용기 병, 상자, 케이스, 컨테이너, 광주리, 포대 ...	시계, 휴대용 시계, 기타의 계측기구, 검사 기구 및 신호기구 시계, 손목 시계, 측정기구, 신호용 기기 ...	장식용품 장신구, 소형장식품, 메달 및 배지, 조화 ...	운송 또는 승강 수단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선박 및 보트 ...
13류	14류	15류	16류
전기의 발전, 공급 또는 변류를 위한 장치 발전기 및 모터, 변압기, 정류기, 배터리, 축전지 ...	저장, 통신 또는 정보검색 장치 시청각 기록 및 재생용 장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기계 엔진, 펌프, 농업용 기계, 건설용 기계, 공작기계 ...	사진촬영기, 영상촬영기 및 광학기기 사진용 카메라, 프로젝터 및 뷰어, 사진 복사기기 ...

[로카르노 분류코드 검색]

- 특허로(www.patent.go.kr) > 화면 우측 > 관련서비스 > 분류코드검색 > 디자인분류코드
- kipris(www.kipris.or.kr) > 디자인 > 스마트 검색 > 분류정보 도우미 > 국제분류

17류	18류	19류	20류
악기 견반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자동연주악기 ...	인쇄 및 사무용기계 타자기 및 계산기, 인쇄기계, 글자체, 제본기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필기용지, 사무용품, 달력, 교재, 그 밖의 인쇄물 ...	판매 및 광고장치, 표지판 자동판매기, 진열 및 판매용구, 표지판 ...
21류	22류	23류	24류
게임용품,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게임기 및 완구, 운동, 스포츠 용구 및 기구 ...	무기, 화학제품, 사냥·낚시 및 살충용품 발사무기, 탄약, 로켓 및 화약제품, 과녁 및 부속품 ...	유체분배, 위생, 난방, 환기 및 공조기기, 고체연료 위생 기기, 난방 기기, 환기 및 공조기기 ...	의료 및 실험실용 기구 의료기구, 실험실 기구 및 도구, 인공보철물 ...
25류	26류	27류	28류
건축유니ット 및 건설자재 건축재료, 가옥, 창고, 계단 사다리 및 비계 ...	조명기기 촛대, 손전등, 조명기기, 차량용 조명기기 ...	담배 및 흡연용품 담배, 시가, 담배 파이프 재떨이, 성냥, 라이터 ...	의약품 및 화장품, 화장·미용용품 및 기기 의약품, 화장품, 화장용품 및 미용기구 ...
29류	30류	31류	32류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소방장치 및 기구, 사고방지 및 구조용 용품 ...	동물 보호 및 사육용품 동물용 의류, 동물 우리, 개집, 사료, 물 공급기 ...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음식 또는 음료조리용 기계 및 기기 다른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음식 또는 음료조리용 기계...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그래픽 디자인, 로고, 장식, 장식문양, 표면문양 ...

※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패턴 및 장식 자체는 유럽연합에서 보호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디자인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디자인맵 사이트는 디자인권 종합 정보 인프라로써, 디자인권에 대한 검색 및 디자인IP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권 검색기능은 세계 주요 6개 지식재산관청(한국, 일본, 미국, WIPO, EUIPO, 독일)에 등록된 디자인권 DB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100여개 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품의 형태에 따른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디자이너 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디자인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디자이너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개발, 연구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등록디자인권
물품별 검색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보

디자인권
전문 콘텐츠

디자인
전문 콘텐츠

디자인권 검색

디자인권 안내

IP 스토리

디자인 스토리

오

Q



소비재에서 산업재까지
다양한 디자인권 정보를 한눈에

디자인권 검색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DESIGNMAP
DESIGNADESIGNRIGHT



가전



디지털기기



인테리어



실외구조물



생활/문구



패션/화장품



건강



스포츠/레저



운송수단



그래픽디자인

IP News

신남방정책국가 교역량 증가에 상표출원도 증가세

2019.12.10



심플함을 강조한 디자인
'위닉스'의 '공기청정기' '제로 X'
공기청정기 디자인등록

주식회사 위닉스



공간과 조화로운 깔끔한 디자인,
'시코트리아'의 '무선 물걸레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디자인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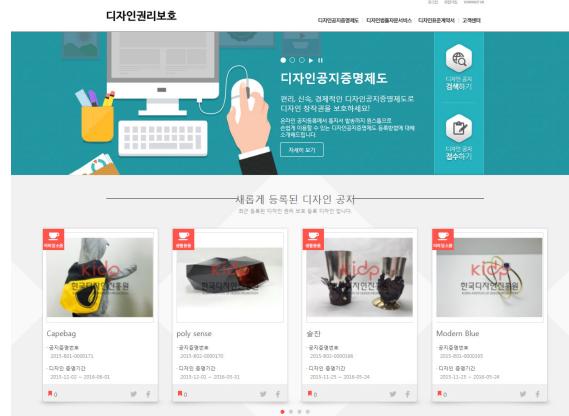
주식회사 시코트리아



가죽과 나무다리를 사용한 귀여운 디자인,
'지앤지비'의 '바틀 에어쿨 미니 냉동기'
냉동기 디자인등록

주식회사 지앤지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간편하게 입증해주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비록 공지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나에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공지증명은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디자인권과 같은 연차료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용을 추천한다.



디자인공지증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사례 1 | 디자인출원을 위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쥬얼리 디자이너 A 씨는 창작된 디자인의 종류가 많아서 비용상 어느 것을 선택적으로 디자인출원할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 먼저 디자인공지증명을 이용하여 공지한 후 12개월 이내([p.24](#))에 선별하여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 2 | 쇼핑몰 운영 시, 게시물 날짜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디자인·제작한 의류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B 대표는 쇼핑몰에 의류를 게시할 때 게시한 일자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신상품으로 소개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특허청에 등록받거나, 역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창작일자 또는 공개 일자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받는 것이 객관적인 공지 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이다.

사례 3 | 적극적 권리행사보다는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경우

나눔·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C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디자인권을 확보하면서 까지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침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 <http://www.designmap.or.kr/iph/lpTrFrD.jsp?p=499&x=4>

찾아보기

<u>그</u>			<u>ㅊ</u>		
거절이유통지	25, 82	분쟁 사례	16, 22, 35, 43, 59, 62, 65	창작자	30, 79
경고장	54, 58, 60, 63	불사용취소	18, 37	출원	38
관련디자인제도	46, 78	비밀디자인	52	출원공개제도	51, 61, 79
기본디자인	46	브랜드	14, 36	출원인	30, 78
<u>ㄷ</u>		<u>ㅅ</u>		<u>ㅋ</u>	
디자인공지증명제도	79, 99	상표	14, 17, 18, 36	캐릭터	12, 18
디자인맵	32, 98	선출원주의	22, 36	키프리스	33, 51
도면	70, 76, 84	선행조사	32, 37		
등록	38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6	<u>ㅌ</u>	
디자인보호법	10, 17, 18, 38	속지주의	26	특허	13, 1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74, 78	수수료	31, 81, 83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69
디자인의 설명	75	신규성	23	특허로	69
		신규성상실	23, 24		
<u>ㄹ</u>		신규성상실의 예외	24, 28, 79	<u>ㅍ</u>	
라이선스	31	실용신안	13, 17	파리 루트	26
로고디자인	14, 36	심사방식	27, 55	평면디자인	16, 19, 88
로카르노 분류코드	96				
<u>ㅁ</u>		<u>ㅇ</u>		<u>ㅎ</u>	
물품류	74, 78, 96	우선권 주장	29, 79	한 벌 물품의 디자인	48, 93
		우선심사	54	해외 디자인제도	26, 28, 53
		유사 판단	34	해외 출원	26, 36
<u>ㅂ</u>		응용미술저작물	16, 61	헤이그 시스템	26
보상금청구권	51, 61	의견서	82	화상디자인	19, 74, 90
보정서	82	일부심사방식	27, 55, 77	회피설계	47
보호기간	10, 13, 14, 16, 27	입체상표	15		
복수디자인	50, 78			*	
부분디자인	19, 42, 75, 79, 89, 90	<u>ㅈ</u>		3D 파일	85, 87
부정경쟁방지법	61, 65	저작권	16, 18, 61		
부품디자인	44	정보제공제도	65		

참고자료

단행본 및 간행물

- 디자인지식재산권, 김지훈 외, 안그라픽스, 2013
- 디자인전쟁, 김종균, 흥시, 2013
- 디자인 심사기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2015
-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김웅,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5
- 특허고객상담사례집, 특허청, 2014
- 디자인심사 표준절차서,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2014
- 디자인 콤파스, 디자인맵 편집부, 특허청, 2010 ~ 2015

강의자료

- 캐릭터의 디자인보호법 출원 전략, 정부용, 특허청, 2015
-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최은림, 특허청, 2015
- 도면 제출시 유의사항, 김상윤, 특허청, 2015
- 디자인 지식재산권 FAQ, 정부용, 특허청, 2015
-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김웅, 해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5

홈페이지

- 디자인맵 사이트 www.designmap.or.kr
- 키프리스 www.kipris.or.kr
- 특허청 www.kipo.go.kr
- 특허로 www.patent.go.kr
- 저작권등록 시스템 www.cros.or.kr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발행일

1쇄 2015년 12월 21일

2쇄 2016년 06월 10일

3쇄 2017년 05월 26일

4쇄 2018년 09월 28일

발행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20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제작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팀

편집 · 디자인

전보영 디자이너 chunida@naver.com

지은이

양혜림 선임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최호석 변리사 더호특허법률사무소

감수

김웅 변리사 해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지훈 사무관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민정준 사무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복병준 변리사 카이국제특허

윤세균 사무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이재창 디자이너 이자브(YZAB)

정부용 사무관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 본 책자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designhr@ippc.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저작이용이 허락된 서울서체(서울시)와 나눔 글꼴(NHN), 배달의민족 글꼴(우아한형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의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IPO 2015 All rights reserved

DESIGN InterPlay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MAP
DESIGN & DESIGNRIGHT

본 책자는 디자인맵 www.designmap.or.kr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